힐스테이트 선화 더와이즈 입주자 모집공고

청약Home | 구글플레이스토어 | 애플앱스토어 |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향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관련하여 정부의 지침에 따른 견본주택 운영(방문관람, 서류접수, 공급계약체결 등)은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관련 안내사항
- 힐스테이트 선화 더와이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해 견본주택 방문을 각 일정별 예약자에 한하여 방문예약제로 운영합니다.
- COVID 감염예방으로 견본주택을 방문이 불가하신 경우 「힐스테이트 선화 더와이즈」상담전화(☎1533-6963)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 청약안내 및 상품관련 등의 문의 사항은 홈페이지(www.hillstate-sunhwathewise.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방시 유의사항

1.견본주택 관람은 오픈기간 사전예약자에 한하여 방문관람이 가능하며, 홈페이지(www.hillstate-sunhwathewise.com) 방문예약시스템을 통한 사전예약 후 방문하여야 합니다.

2.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 체결은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일정에 예약 후 방문하여야 하며, 예약일자 및 시간을 필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3. 특별공급 신청의 경우 인터넷 청약신청이 원칙이오나, 고령자·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특별공급 청약신청을 해당 신청일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10:00~14:00, 은행창구접수 불가, 특별공급 신청을 견본주택에서 하시고자 하는 경우 대표번호(☎1533-6963)로 방문 예약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4. 당첨자 견본주택 내방시 당첨자 1인만 내방 가능(동행자 1인만 입장 가능 / 대리인 위임 시 대리인 1인만 입장 가능)합니다.

5.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견본주택 입장 전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
- 손소독제, 비접촉체온계 등 예방절차에 불응할 경우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견본주택 관람, 당첨자의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 체결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는 경우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힐스테이트 선화 더와이즈 고객센터(1533-6963) 및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기본적인 청약자격 및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소득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2.02.28.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12.09.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대전광역시 중구)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단, 동일단지 내 1인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 1건씩 청약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 시 일반공급 선정 대상에서 제외처리 함)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2.09.) 현재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대전광역시 1년 이상 거주자가

(2021.12.09. 이전부터 계속 거주) 우선합니다.

■ 2019.11.0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 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 등"은 분양권 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 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 (주택가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필요 (6개월이상 , 예치금) ※ 단,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불필요	필요 (6개월이상 ,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6개월이상 ,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

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YESKEY)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
APT(특별공급/1·2순위) /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O	O	O	O
APT무순위 / 잔여세대 / 취소 후 재공급	O	O	X	X

- 단, APT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 청약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기타 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및 LH청약센터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및 (민간 사전청약)당첨자 선정 후에도 무효처리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해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1주택(분양권 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①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해야 하며, ②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③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해야 합니다.

- ②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③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30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hillstate-sunhwathewise.com)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06.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 등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 등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 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다만,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다만,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주택법」제65조 및「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에 따라「주택법」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대전광역시 중구는 비규제 지역으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규정에 의거 6억원 이상 주택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 하며, 본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외국인 포함)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 미제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인지세법」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부동산 분양계약과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은 인지세 과세대상이며, 분양계약(전매의 경우 분양권 전매 명의변경 승인일)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인지세를 미납한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에 따라 최고 300%의 가산세가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 업자에 대해서도「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투기적발자 처벌(「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56조,「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56조 및「주택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청약제한 및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 시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불법 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2022.02.28.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일반1순위	일반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제출	계약체결
일 정	12월 19일(월)	12월 20일(화)	12월 21일(수)	12월 27일(화)	12월 28일(수) ~ 01월 07일(토)	01월 09일(월) ~ 01월 11일(수)
방 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방문접수 (홈페이지를 통한 예약제 운영 예정)	
장 소	▪ 사업주체 견본주택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당사 견본주택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4-16) 상기 일정, 방법 및 장소 등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단, 코로나19로 인해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과-2110호(2022.12.09.)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85-1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5층, 지상 49층, 5개동, 총 851세대

[특별공급 355세대(일반[기관추천] 62세대, 다자녀가구 83세대, 신혼부부 125세대, 노부모부양 23세대, 생애최초 62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주차대수 : 총 1,453대(아파트 1,287대,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166대)

■ 입주시기 : 2027년 02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민영 주택	2022000785	01	084.9700A	84A	84.9700	30.5249	115.4949	62.3162	177.8110	15.9419	386	38	38	77	11	38	202	184	9
		02	084.9800B	84B	84.9800	31.9676	116.9476	62.3235	179.2710	15.9438	160	16	16	32	4	16	84	76	4
		03	084.9500C	84C	84.9500	31.6795	116.6295	62.3015	178.9310	15.9382	41	4	4	8	1	4	21	20	1
		04	084.9800D	84D	84.9800	31.1576	116.1376	62.3235	178.4610	15.9438	42	4	4	8	1	4	21	21	1
		05	105.9500	105	105.9500	39.3979	145.3479	77.7027	223.0505	19.8782	181	-	18	-	5	-	23	158	5
		06	108.9500	108	108.9500	40.2062	149.1562	79.9028	229.0590	20.4410	36	-	3	-	1	-	4	32	0
		07	149.8700	149	149.8700	56.4919	206.3619	109.9132	316.2751	28.1178	2	-	-	-	-	-	-	2	0
		08	162.6000	162	162.6000	63.8320	226.4320	119.2492	345.6812	30.5062	1	-	-	-	-	-	-	1	0
		09	174.4000	174	174.4000	69.6015	244.0015	127.9032	371.9047	32.7201	2	-	-	-	-	-	-	2	0
	합 계										851	62	83	125	23	62	355	496	20

※ 상기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분양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평형 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주거 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 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기계/전기실, 부대복리시설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금액이 없음.)

※ 각 세대별 주거 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 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 공용면적이 해당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타입의 경우라도 해당 세대 주거 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주차장 및 공용부위 등 면적은 시설면적 비율로 배분하였습니다.

※ 모집공고상의 면적은 제곱미터(㎡) 소수점 4째자리까지 표현(소수점 5째자리에서 버림)되며 전체 총면적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우선순위대로 0.0001㎡ 단위로 강제 조정하여 오차를 최소화하였고, 이에 따라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주거전용면적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근린생활시설, 분양주택 상호간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고,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최하층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최하층으로 합니다. (최하층 우선 배정세대는 총 공급세대에 포함된 세대수입니다.)

※ 특별공급 미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동일한 주택형이라 하여도 타입별 세부면적과 해당 동, 라인, 층은 상이할 수 있으니 입주자모집공고 내용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 표시 안내

주택형	084.9700A	084.9800B	084.9500C	084.9800D	105.9500	108.9500	149.8700	162.6000	174.4000
견본주택 등의 약식표기	84A	84B	84C	84D	105	108	149	162	174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표기 (전용 면적)	공급 세대수	동별 (라인별)	층구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	1 회	2 회	1 회(10%)	2 회(10%)	3 회(10%)	4 회(10%)	5 회(10%)	6 회(10%)	입주지정일
									계약시	23.01.31	23.06.20	24.02.20	24.10.21	25.10.20	26.03.20	26.08.20	
84A	386	401 동 4 호 402 동 4 호	4-5 층	4	257,158,935	294,341,065	-	551,500,000	10,000,000	45,150,000	55,150,000	55,150,000	55,150,000	55,150,000	55,150,000	55,150,000	165,450,000
			6-9 층	8	259,770,159	297,329,841	-	557,100,000	10,000,000	45,710,000	55,710,000	55,710,000	55,710,000	55,710,000	55,710,000	55,710,000	167,130,000
			10-19 층	20	262,428,012	300,371,988	-	562,800,000	10,000,000	46,280,000	56,280,000	56,280,000	56,280,000	56,280,000	56,280,000	56,280,000	168,840,000
			20-29 층	18	266,344,848	304,855,152	-	571,200,000	10,000,000	47,120,000	57,120,000	57,120,000	57,120,000	57,120,000	57,120,000	57,120,000	171,360,000
			30-39 층	20	268,956,072	307,843,928	-	576,800,000	10,000,000	47,680,000	57,680,000	57,680,000	57,680,000	57,680,000	57,680,000	57,680,000	173,040,000
			40 층이상	20	271,613,925	310,886,075	-	582,500,000	10,000,000	48,250,000	58,250,000	58,250,000	58,250,000	58,250,000	58,250,000	58,250,000	174,750,000
		401 동 1 호 402 동 1 호 403 동 1 호	4-5 층	6	254,594,340	291,405,660	-	546,000,000	10,000,000	44,600,000	54,600,000	54,600,000	54,600,000	54,600,000	54,600,000	54,600,000	163,800,000
			6-9 층	12	257,205,564	294,394,436	-	551,600,000	10,000,000	45,160,000	55,160,000	55,160,000	55,160,000	55,160,000	55,160,000	55,160,000	165,480,000
			10-19 층	30	259,770,159	297,329,841	-	557,100,000	10,000,000	45,710,000	55,710,000	55,710,000	55,710,000	55,710,000	55,710,000	55,710,000	167,130,000
			20-29 층	27	263,686,995	301,813,005	-	565,500,000	10,000,000	46,550,000	56,550,000	56,550,000	56,550,000	56,550,000	56,550,000	56,550,000	169,650,000
			30-39 층	30	266,298,219	304,801,781	-	571,100,000	10,000,000	47,110,000	57,110,000	57,110,000	57,110,000	57,110,000	57,110,000	57,110,000	171,330,000
			40 층이상	27	268,862,814	307,737,186	-	576,600,000	10,000,000	47,660,000	57,660,000	57,660,000	57,660,000	57,660,000	57,660,000	57,660,000	172,980,000
		404 동 4 호 405 동 4 호	4-5 층	4	254,081,421	290,818,579	-	544,900,000	10,000,000	44,490,000	54,490,000	54,490,000	54,490,000	54,490,000	54,490,000	54,490,000	163,470,000
			6-9 층	8	256,646,016	293,753,984	-	550,400,000	10,000,000	45,040,000	55,040,000	55,040,000	55,040,000	55,040,000	55,040,000	55,040,000	165,120,000
			10-19 층	20	259,257,240	296,742,760	-	556,000,000	10,000,000	45,600,000	55,600,000	55,600,000	55,600,000	55,600,000	55,600,000	55,600,000	166,800,000
			20-29 층	18	263,127,447	301,172,553	-	564,300,000	10,000,000	46,430,000	56,430,000	56,430,000	56,430,000	56,430,000	56,430,000	56,430,000	169,290,000
			30-39 층	20	265,738,671	304,161,329	-	569,900,000	10,000,000	46,990,000	56,990,000	56,990,000	56,990,000	56,990,000	56,990,000	56,990,000	170,970,000
			40 층이상	12	268,349,895	307,150,105	-	575,500,000	10,000,000	47,550,000	57,550,000	57,550,000	57,550,000	57,550,000	57,550,000	57,550,000	172,650,000
		404 동 1 호 405 동 1 호	4-5 층	4	251,516,826	287,883,174	-	539,400,000	10,000,000	43,940,000	53,940,000	53,940,000	53,940,000	53,940,000	53,940,000	53,940,000	161,820,000
			6-9 층	8	254,081,421	290,818,579	-	544,900,000	10,000,000	44,490,000	54,490,000	54,490,000	54,490,000	54,490,000	54,490,000	54,490,000	163,470,000
			10-19 층	20	256,646,016	293,753,984	-	550,400,000	10,000,000	45,040,000	55,040,000	55,040,000	55,040,000	55,040,000	55,040,000	55,040,000	165,120,000
			20-29 층	18	260,516,223	298,183,777	-	558,700,000	10,000,000	45,870,000	55,870,000	55,870,000	55,870,000	55,870,000	55,870,000	55,870,000	167,610,000
			30-39 층	20	263,080,818	301,119,182	-	564,200,000	10,000,000	46,420,000	56,420,000	56,420,000	56,420,000	56,420,000	56,420,000	56,420,000	169,260,000
			40 층이상	12	265,645,413	304,054,587	-	569,700,000	10,000,000	46,970,000	56,970,000	56,970,000	56,970,000	56,970,000	56,970,000	56,970,000	170,910,000
84B	160	404 동 2,3 호 405 동 2,3 호	4-5 층	8	255,200,517	292,099,483	-	547,300,000	10,000,000	44,730,000	54,730,000	54,730,000	54,730,000	54,730,000	54,730,000	54,730,000	164,190,000
			6-9 층	16	257,765,112	295,034,888	-	552,800,000	10,000,000	45,280,000	55,280,000	55,280,000	55,280,000	55,280,000	55,280,000	55,280,000	165,840,000
			10-19 층	40	260,376,336	298,023,664	-	558,400,000	10,000,000	45,840,000	55,840,000	55,840,000	55,840,000	55,840,000	55,840,000	55,840,000	167,520,000
			20-29 층	36	264,293,172	302,506,828	-	566,800,000	10,000,000	46,680,000	56,680,000	56,680,000	56,680,000	56,680,000	56,680,000	56,680,000	170,040,000
			30-39 층	40	266,904,396	305,495,604	-	572,400,000	10,000,000	47,240,000	57,240,000	57,240,000	57,240,000	57,240,000	57,240,000	57,240,000	171,720,000
			40 층이상	20	269,515,620	308,484,380	-	578,000,000	10,000,000	47,800,000	57,800,000	57,800,000	57,800,000	57,800,000	57,800,000	57,800,000	173,400,000

84C	41	403 동 3 호	4-5 층	2	255,806,694	292,793,306	-	548,600,000	10,000,000	44,860,000	54,860,000	54,860,000	54,860,000	54,860,000	54,860,000	54,860,000	164,580,000
			6-9 층	4	258,417,918	295,782,082	-	554,200,000	10,000,000	45,420,000	55,420,000	55,420,000	55,420,000	55,420,000	55,420,000	55,420,000	166,260,000
			10-19 층	10	261,029,142	298,770,858	-	559,800,000	10,000,000	45,980,000	55,980,000	55,980,000	55,980,000	55,980,000	55,980,000	55,980,000	167,940,000
			20-29 층	9	264,945,978	303,254,022	-	568,200,000	10,000,000	46,820,000	56,820,000	56,820,000	56,820,000	56,820,000	56,820,000	56,820,000	170,460,000
			30-39 층	10	267,557,202	306,242,798	-	573,800,000	10,000,000	47,380,000	57,380,000	57,380,000	57,380,000	57,380,000	57,380,000	57,380,000	172,140,000
			40 층이상	6	270,168,426	309,231,574	-	579,400,000	10,000,000	47,940,000	57,940,000	57,940,000	57,940,000	57,940,000	57,940,000	57,940,000	173,820,000
84D	42	403 동 4 호	4-5 층	2	255,993,210	293,006,790	-	549,000,000	10,000,000	44,900,000	54,900,000	54,900,000	54,900,000	54,900,000	54,900,000	54,900,000	164,700,000
			6-9 층	4	258,604,434	295,995,566	-	554,600,000	10,000,000	45,460,000	55,460,000	55,460,000	55,460,000	55,460,000	55,460,000	55,460,000	166,380,000
			10-19 층	10	261,215,658	298,984,342	-	560,200,000	10,000,000	46,020,000	56,020,000	56,020,000	56,020,000	56,020,000	56,020,000	56,020,000	168,060,000
			20-29 층	9	265,132,494	303,467,506	-	568,600,000	10,000,000	46,860,000	56,860,000	56,860,000	56,860,000	56,860,000	56,860,000	56,860,000	170,580,000
			30-39 층	10	267,743,718	306,456,282	-	574,200,000	10,000,000	47,420,000	57,420,000	57,420,000	57,420,000	57,420,000	57,420,000	57,420,000	172,260,000
			40 층이상	7	270,354,942	309,445,058	-	579,800,000	10,000,000	47,980,000	57,980,000	57,980,000	57,980,000	57,980,000	57,980,000	57,980,000	173,940,000
105	181	401 동 2 호 402 동 2 호 403 동 2 호	4-5 층	6	341,208,200	390,538,000	39,053,800	770,800,000	10,000,000	67,080,000	77,080,000	77,080,000	77,080,000	77,080,000	77,080,000	77,080,000	231,240,000
			6-9 층	12	344,705,200	394,540,700	39,454,100	778,700,000	10,000,000	67,870,000	77,870,000	77,870,000	77,870,000	77,870,000	77,870,000	77,870,000	233,610,000
			20-29 층	21	353,425,800	404,522,000	40,452,200	798,400,000	10,000,000	69,840,000	79,840,000	79,840,000	79,840,000	79,840,000	79,840,000	79,840,000	239,520,000
			30-39 층	30	356,878,600	408,474,000	40,847,400	806,200,000	10,000,000	70,620,000	80,620,000	80,620,000	80,620,000	80,620,000	80,620,000	80,620,000	241,860,000
			40 층이상	24	360,375,700	412,476,600	41,247,700	814,100,000	10,000,000	71,410,000	81,410,000	81,410,000	81,410,000	81,410,000	81,410,000	81,410,000	244,230,000
		401 동 3 호 402 동 3 호	4-5 층	4	337,799,600	386,636,700	38,663,700	763,100,000	10,000,000	66,310,000	76,310,000	76,310,000	76,310,000	76,310,000	76,310,000	76,310,000	228,930,000
			6-9 층	8	341,252,400	390,588,700	39,058,900	770,900,000	10,000,000	67,090,000	77,090,000	77,090,000	77,090,000	77,090,000	77,090,000	77,090,000	231,270,000
			10-19 층	20	344,705,200	394,540,700	39,454,100	778,700,000	10,000,000	67,870,000	77,870,000	77,870,000	77,870,000	77,870,000	77,870,000	77,870,000	233,610,000
			20-29 층	18	349,884,400	400,468,700	40,046,900	790,400,000	10,000,000	69,040,000	79,040,000	79,040,000	79,040,000	79,040,000	79,040,000	79,040,000	237,120,000
			30-39 층	20	353,337,200	404,420,700	40,442,100	798,200,000	10,000,000	69,820,000	79,820,000	79,820,000	79,820,000	79,820,000	79,820,000	79,820,000	239,460,000
			40 층이상	18	356,790,100	408,372,600	40,837,300	806,000,000	10,000,000	70,600,000	80,600,000	80,600,000	80,600,000	80,600,000	80,600,000	80,600,000	241,800,000
108	36	401 동 2 호 402 동 2 호 403 동 2 호	10-19 층	30	357,321,300	408,980,600	40,898,100	807,200,000	10,000,000	70,720,000	80,720,000	80,720,000	80,720,000	80,720,000	80,720,000	80,720,000	242,160,000
			20-29 층	6	362,677,500	415,111,300	41,511,200	819,300,000	10,000,000	71,930,000	81,930,000	81,930,000	81,930,000	81,930,000	81,930,000	81,930,000	245,790,000
149	2	404 동 2 호 405 동 2 호	40 층이상	2	968,778,200	1,108,838,000	110,883,800	2,188,500,000	10,000,000	208,850,000	218,850,000	218,850,000	218,850,000	218,850,000	218,850,000	218,850,000	656,550,000
162	1	403 동 2 호	40 층이상	1	1,063,022,000	1,216,707,200	121,670,800	2,401,400,000	10,000,000	230,140,000	240,140,000	240,140,000	240,140,000	240,140,000	240,140,000	240,140,000	720,420,000
174	2	401 동 2 호 402 동 2 호	40 층이상	2	1,145,491,100	1,311,099,000	131,109,900	2,587,700,000	10,000,000	248,770,000	258,770,000	258,770,000	258,770,000	258,770,000	258,770,000	258,770,000	776,310,000

■ 공통사항

- 본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상기 공급금액은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사업주체 및 시공자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이며, 85㎡초과 세대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2009.4.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 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 인지세 및 그 외 제세공과금이 미포함 되어 있으며, 계약자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 비용이 미포함되어 있으며, 청약당첨자가 분양계약 시 선택이 가능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추가선택품목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추가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상기 공급금액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단지 내 상가)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실, 세대 벽체면적 등의 주거 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 및 지하피트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코어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입니다.(필로티 있는 동은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 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 되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로,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다만, 임시사용승인 및 동별사용검사를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않음)
-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금융기관 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공급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및 잔금 선납 시 선납금액은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자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 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거주지역은 주민등록표등본,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초본을 기준(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분양가에 계산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 관련 조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과세 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지번(공급위치), 단지 명칭, 동 표시, 외부 색채와 계획, 조경시설물 등이 관계기관 심의 및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 및 판매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변경된 분양 및 판매조건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분양자는 이와 관련하여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구조물 등 제반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 본 아파트는 건축법 제48조 제3항 및 제48조의3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능력 공개에 의거 메르칼리 진도 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구분	등급
내진Ⅰ등급	Ⅶ-0.216g

※ 내진능력 :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에 따라 산정한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MMI등급, Ⅶ-최대지반가속도) 으로 표기

Ⅱ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 분			84A	84B	84C	84D	105	108	149	162	174	합 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10	5	2	2	-	-	-	-	-	19
	장기복무 제대군인		4	1	-	-	-	-	-	-	-	5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4	1	-	-	-	-	-	-	-	5
	중소기업 근로자		4	1	-	-	-	-	-	-	-	5
	장애인	대전광역시	8	4	2	2	-	-	-	-	-	16
		충청남도	4	2	-	-	-	-	-	-	-	6
		세종특별자치시	4	2	-	-	-	-	-	-	-	6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38	16	4	4	18	3	-	-	-	83
신혼부부 특별공급			77	32	8	8	-	-	-	-	-	125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1	4	1	1	5	1	-	-	-	23
생애최초 특별공급			38	16	4	4	-	-	-	-	-	62
합 계			202	84	21	21	23	4	-	-	-	355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신혼부부)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와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생애최초)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1인 가구 신청자,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 및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공통사항

<table>
<tr><th></th><th>내용</th></tr>
<tr><td>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td><td>•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td></tr>
<tr><td>무주택
요건</td><td>•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 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민간 사전청약을 포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td></tr>
<tr><td>청약자격
요건</td><td>•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table>
<tr><th>구 분</th><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th>그 밖의 광역시
(대전광역시)</th><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th></tr>
<tr><td>전용면적 85㎡ 이하</td><td>300만원</td><td>250만원</td><td>200만원</td></tr>
<tr><td>전용면적 102㎡ 이하</td><td>600만원</td><td>400만원</td><td>300만원</td></tr>
<tr><td>전용면적 135㎡ 이하</td><td>1,000만원</td><td>700만원</td><td>400만원</td></tr>
<tr><td>모든면적</td><td>1,500만원</td><td>1,000만원</td><td>500만원</td></tr>
</table>
</td></tr>
</table>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62세대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추천기관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
- 장애인 : 대전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세종특별자치시청 노인장애인과, 충남도청 장애인복지과
-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 국가보훈처 대전지방보훈청 복지과
- 중소기업 근로자 : 대전・세종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정협력과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함.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83세대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되며,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함.
- 기타 본 공고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및 관계 법령에 따름.

▪ **당첨자 선정방법**

- 해당지역(대전광역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 기준표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공급신청자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대전광역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20% 범위) : 125세대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 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자는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함.
- 기타 본 공고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및 관계 법령에 따름.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기준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기준
2022.12.09.	전년도 소득	전년도 소득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및「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당첨자 선정 방법**

- **2021.11.16.**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
 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공급 합니다.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전에 출생신고한 경우를 말함)를 포함]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대전광역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순위 상관없이 해당 주택건설지역(대전광역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함.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2022년 적용)

공급유형	구분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2022년 적용)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 기준 구분	우선공급 (기준소득, 5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6,208,934원	~7,200,809원	~7,326,072원	~7,779,825원	~8,233,578원	~8,687,331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초과~120% 이하	6,208,935원~ 7,450,721원	7,200,810원~ 8,640,971원	7,326,073원~ 8,791,286원	7,779,826원~ 9,335,790원	8,233,579원~ 9,880,294원	8,687,332원~ 10,424,797원
	일반공급 (상위소득, 2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140%이하	6,208,935원~ 8,692,508원	7,200,810원~ 10,081,133원	7,326,073원~ 10,256,501원	7,779,826원~ 10,891,755원	8,233,579원~ 11,527,009원	8,687,332원~ 12,162,263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160%이하	7,450,722원~ 9,934,294원	8,640,972원~ 11,521,294원	8,791,287원~ 11,721,715원	9,335,791원~ 12,447,720원	9,880,295원~ 13,173,725원	10,424,798원~ 13,899,730원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추첨제, 30%)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14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8,692,509원~	10,081,134원~	10,256,502원~	10,891,756원~	11,527,010원~	12,162,264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9,934,295원~	11,521,295원~	11,721,716원~	12,447,721원~	13,173,726원~	13,899,731원~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20%(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추 첨 제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31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453,753)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을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청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자산보유기준

<table>
<tr><th>구분</th><th>자산보유기준</th><th colspan="2">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th></tr>
<tr><td rowspan="2">부동산
(건물+토지)</td><td rowspan="2">3억3,100만원
이하</td><td>건축물</td><td>•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tr><th colspan="2">건축물 종류</th><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tr>
<tr><td rowspan="2">주 택</td><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tr>
<tr><td>단독주택</td><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tr>
<tr><td colspan="2">주택 외</td><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
</table></td></tr>
<tr><td>토지</td><td>•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td></tr>
</table>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23세대

▪ **신청자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해야 함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함.
※ 기타 본 공고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및 관계 법령에 따름.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대전광역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거주자가 우선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3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62세대

▪ **신청자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
 * (1인 가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서(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 미혼인 자녀(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도 없는 신청자.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청약가능하며, 단독세대(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와 단독세대가 아닌 자로 구분하며, 단독세대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가능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 이하인 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기준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기준
2022.12.09	전년도 소득	전년도 소득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및「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해야 함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2022년 적용)

공급유형		구분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2022년 적용)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 기준 구분	우선공급(기준소득, 50%)	130% 이하	~8,071,614원	~9,361,052원	~9,523,894원	~10,113,773원	~10,703,651원	~11,293,530원
	일반공급(상위소득, 20%)	130% 초과~160% 이하	8,071,615원 ~9,934,294원	9,361,053원 ~11,521,294원	9,523,895원 ~11,721,715원	10,113,774원 ~12,447,720원	10,703,652원 ~13,173,725원	11,293,531원 ~13,899,730원
추첨제 (30%)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충족	9,934,295원~	11,521,295원~	11,721,716원~	12,447,721원~	13,173,726원~	13,899,731원~

	1인 가구	160%이하	~9,934,294원	~11,521,294원	~11,721,715원	~12,447,720원	~13,173,725원	~13,899,730원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9,934,295원~	11,521,295원~	11,721,716원~	12,447,721원~	13,173,726원~	13,899,731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453,753)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을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청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 1인 가구 신청자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청약자격을 만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 자산보유기준

<table>
<tr><th>구분</th><th>자산보유기준</th><th colspan="3">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th></tr>
<tr><td rowspan="2">부동산
(건물+토지)</td><td rowspan="2">3억3,100만원
이하</td><td>건축물</td><td colspan="2">•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tr><th colspan="2">건축물 종류</th><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tr>
<tr><td rowspan="2">주 택</td><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tr>
<tr><td>단독주택</td><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tr>
<tr><td colspan="2">주택 외</td><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
</table></td></tr>
<tr><td>토지</td><td colspan="2">•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td></tr>
</table>

■ **당첨자 선정방법**

- 2021.11.16.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160%를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및 1인 가구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소득기준구분 및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대전광역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거주자가 우선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함.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Ⅲ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함. 단, 청약 신청자 중 동일 순위내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항에 의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 1년 이상 거주(2021.12.09.) 이전부터 계속하여 거주)신청자가 대전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해당지역	기타지역
대전광역시 1년 이상 거주(2021.12.09.) 이전부터 계속하여 거주)자	대전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거주자

■ **청약신청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층별, 동별, 호별 등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접수하고, 선순위 청약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입주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30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음.(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접수 불가)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①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②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③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④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청약신청 접수 시 유의사항

①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에 의하여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②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

③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 취소 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2019.12.06.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함.

※ 신청한 가점점수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의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다음 순위의 예비입주자 점수와 비교하여 동점이거나 더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 선정이 취소됨.

• 청약전 반드시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에서 청약제한사항 확인 요망.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 제6항에 의거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1순위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점제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

①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 부적격 당첨자 당첨제한기간 : 2021.11.16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1년, 수도권 외의 지역은 6개월(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위축지역은 3개월로 해당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음

■ **입주자저축 순위별 요건**

구분	순위	주택형	청약관련 신청자격
민영 주택	1순위	전용 85㎡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 가점제 (40%) 및 추첨제 (60%)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점제 접수)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전용 85㎡초과	▪ 전용면적 85㎡ 초과 : 추첨제 (100%) 적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2순위	전 주택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2])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역별, 주택규모별 예치금을 예치한 청약통장 가입자는 그 예치금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에 대해 별도의 면적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 가점제 적용 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1)

분	내 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함.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함.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함.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

	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함.
④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

■ 청약 가점제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표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⑴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⑵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 출입국사실증명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 청약통장(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됨.

Ⅳ 청약신청

■ 청약신청 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2022.12.19(월) (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 (사업주체 견본주택 : 10:00~14:0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사업주체 견본주택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4-16)
일반공급	1순위	2022.12.20(화) 09:00~17:30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2순위	2022.12.21(수) 09:00~17:30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단, 코로나19로 인해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9: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모든 은행의 청약통장 가입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청약신청」⇒「APT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청약신청」⇒「APT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공고단지 청약연습"과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약에 제한은 없습니다.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청약신청」⇒「APT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② [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세대원 등록방법 :「청약자격확인」⇒「세대구성원 등록/조회」및「세대구성원 동의」 ・청약연습방법 :「공고단지 청약연습」⇒「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table>
<tr><th>구 분</th><th colspan="3">구비사항</th></tr>
<tr><td rowspan="3">일반
공급</td><td>본인 신청 시</td><td colspan="2">・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td></tr>
<tr><td rowspan="2">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td><td colspan="2">・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td></tr>
<tr><td>인감증명 방식</td><td>본인서명확인 방식</td></tr>
<tr><td>-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td><td>-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td></tr>
</table>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지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 분	선 정 방 법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생애최초특별공급,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3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가 공급세대수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추첨제로 공급하되,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 1년 이상 거주신청자가 대전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함.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 등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 등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유의사항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발표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V 당첨자 발표

■ 일정 및 계약장소

구 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일시: 2022.12.27.(화) •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을 통해 확인하여야 합니다.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全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2.12.27 (화) ~ 2022.01.05 (목) (10일간)
인터넷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2.12.27 (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청약당첨조회 및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Ⅵ 자격검증 서류 제출

■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 제출

※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일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 자격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청약 내역과 대조, 검증하여 적격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구 분	신청대상자	일시 및 장소 (※예비입주자의 경우 별도 통보 예정)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일시 : 2022.12.28(수) ~ 2022.01.07(일) 11일간 **(11일간, 10:00 ~ 17:00)** • 장소 : 당사 견본주택(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4-16) ※ 접수건수의 과밀로 인한 검수일정 및 운영시간은 상이할 수 있음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검수 일정은 별도 통보예정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 특별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제증명 서류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모두 표기되어야 하며, *표시 및 누락시 접수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수	추가 (해당자)			
특별공급 공통서류	○		특별공급신청서, 확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무주택서약서	본인	• 무주택 입증서류를 무주택 서약서로 대체, 견본주택 비치 ※ 인터넷 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용도:아파트 계약용(본인발급)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발급분은 절대 불가함, 서명인증서(외국인에 한함) ※ 본인에 한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가능하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접수 및 대리계약 불가 ※ 견본주택 청약신청자(정보취약계층)는 청약접수 시 제출
	○		인감도장	본인	•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인감도장 일치 여부 확인) ※ 인터넷 청약 신청한 당첨자는 계약 시 지참 필수 ※ 견본주택 청약신청자(정보취약계층)는 청약접수 및 계약 시 지참 필수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본인 서명으로 작성 (대리인 위임 불가)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신고증 및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본인 등본 발급 유의사항과 같이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본인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변동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미혼,이혼,사별,단독세대,배우자 분리세대 등 배우자 유무확인
		○		배우자	• 재혼가정의 자녀(본인의 친자녀가 아닌 자녀)로서 당첨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주민등록표등본 상 당첨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 본인 및 배우자,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관계 확인 •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서	본인	•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항, 제23조 2항 7호에 의거 해외거주기간 확인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 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국내 거주기간 확인 (청약자만 생업상(단신부임) 해외 체류(90일초과)중일 경우 국내 거주자로 인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해당지역 거주요건 : 대전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직계존·비속	• 직계 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기록대조일을 해당 부양가족의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 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직계 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 -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직계 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사항)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본인	•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청약 home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장애인,국가유공자 제외) ※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복무확인서	본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이 기타지역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 신청한 경우 군복무 기간(10년 이상)명시
		○	해외체류(단신부임) 관련 증빙서류	본인 및 세대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8항에 의거 당첨자(청약신청자) 본인만(혼자)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국외에 현재 체류중이거나, 체류한 경우로서 해당 해외 체류 기간을 국내 체류기간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아래표 '해외근무자(단신부임) 증빙서류' 참조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제증명 서류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모두 표기되어야 하며, *표시 및 누락시 접수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수	추가 (해당자)			
기관추천 (일반)특별공급	○		해당 기관별 추천 명단	본인	• 해당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로 확인 ※ 해당기관의 추천대상자는 사업주체(견본주택)에서 확인 가능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	• 견본주택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주민등록표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 확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주소변동사항(3년이상), 변동사유 및 발생일,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자녀로 인정 받고자 하는 배우자 전혼 자녀가 본인 주민등록표상에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3세대이상 세대 구성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된 경우
				자녀	• 이혼·재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상세"로발급
		○	출생관련증명서	자녀	•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자녀	• 미성년 자녀가 만18세로 미성년임을 증명하기 위한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	• 만19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혼인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간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국내의료기관으로 한정), 유산관련 진단서]제출 ※ 임신진단서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임신확인서 인정안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견본주택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성년자(만19세이상)인 세대원 전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당첨자(청약신청자) 및 성년자(만19세 이상 포함)인 세대원 전원 제출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 T : 1577-1000, FAX수신 문서 가능) ※ 분리된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필수 ※ 모집공고일 이후 변동사항,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발급
	○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성년자(만19세이상)인 세대원 전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당첨자(청약신청자) 및 성년자(만19세 이상 포함)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증빙서류 [아래표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입증서류 참조], FAX수신문서 등 복사분 접수 불가, 서류 접수 시 직인이 날인된 원본 서류필수 ※ 분리된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필수 ※ 전년도 소득이 없고, 현재 근로자가 아닌 경우 → 전년도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을 반드시 제출
		○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전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경우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제출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참조]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결과 발급) ※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기본증명서(상세)	자녀	•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로고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상세"발급
		○		직계비속	• 혼인신고 전 출생자녀를 혼인기간 중 출생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간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국내의료기관으로 한정), 유산관련 진단서]제출 ※ 임신진단서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임신확인서 인정안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견본주택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	비사업자확인각서	본인 및 19세 이상 세대원	• 소득증빙대상 세대원(성년자)전원 중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견본주택 비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제증명 서류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모두 표기되어야 하며, *표시 및 누락시 접수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수	추가 (해당자)			
생애최초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자녀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상세"로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본인 및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상세"로 발급
		○		자녀	•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에 포함하는 경우 ※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주소변동사항, 변동사유 및 발생일,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배우자	• 가구원에 해당하는 직계존속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 ※ 주소변동사항, 변동사유 및 발생일,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소득세 납부입증서류	본인	• 청약자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모집공고일 이전 5개년도 서류(발급처 : 해당직장, 세무서) ※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 제출서류'참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성년자(만19 세이상)인 세대원 전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당첨자(청약신청자) 및 성년자(만19세 이상 포함)인 세대원 전원 제출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 T : 1577-1000, FAX수신 문서 가능) ※ 분리된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필수 ※ 모집공고일 이후 변동사항,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발급
	○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당첨자(청약신청자) 및 성년자(만19세 이상 포함)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증빙서류 [아래표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입증서류 참조], FAX수신문서 등 복사분 접수 불가, 서류 접수 시 직인이 날인된 원본 서류필수 ※ 분리된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필수 ※ 전년도 소득이 없고, 현재 근로자가 아닌 경우 → 전년도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을 반드시 제출
		○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전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경우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제출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참조]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결과 발급) ※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비사업자확인각서	본인 및 19세 이상 세대원	• 소득증빙대상 세대원(성년자)전원 중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견본주택 비치)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주택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등본상에 등재된 사실 확인 ※ 주민등록번호, 과거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피부양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와 만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로부터 과거 1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등본상에 등재된 사실확인 ※ 주민등록번호, 과거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가 된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배우자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또는 배우자의 피부양 직계존속으로 신청한 경우
	○		출입국사실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 국토교통부「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에 따라 외국인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기록대조일을 본인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2.09)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 "Y"로 설정하여 발급
		○		피부양 직계비속	• 국토교통부「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에 따라 외국인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내국인 직계비속이라도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만30세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기록대조일을 본인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2.09)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 "Y"로 설정하여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본인: 만30세 미만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피부양 직계비속	• 자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 상 만18세 이상의 미혼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제증명 서류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모두 표기되어야 하며, *표시 및 누락시 접수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수	추가 (해당자)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당첨자	• 용도: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또는 아파트 계약용(본인발급)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발급분은 절대 불가함, 서명인증서(외국인에 한함)
	○		위임장	당첨자	• 견본주택 비치,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대리인 신분증, 도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내거소신고증(재외동포), 외국인등록증(외국인)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소명자료)		○	사업주체가 필요시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여부 증명서류	• 주택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 기준에 따른 해당 서류로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서 정하는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기타 증명 서류 ※ 일반 주택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포함) ※ 무허가 주택 :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한 무허가 건물임을 확인하는 공문(무허가건물확인서) ※ 폐가, 멸실 주택 : 관할 지차체에서 발급하는 폐가 예정이나, 멸실 확인 가능한 서류(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 : 건축물대장에 공동(개별) 주택공시가격 확인원 포함하여 발부 또는 주택공시가격확인서 발급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당첨자 및 세대원의 소유 주택현황 사례가 다양하여 사업주체가 추가로 증빙을 요구하는 서류
				당첨사실 소명 등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인정 서류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입증서류 [표1]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table>
<tr><th colspan="3">해당자격</th><th>소득입증 제출서류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th><th>발급처</th></tr>
<tr><td rowspan="4">근
로
자</td><td rowspan="2">근무</td><td>계속근무자 / 전년도 이직자</td><td>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필수)
※ 출산휴가, 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출산휴가 및 휴직 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td><td>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 또는 세무서</td></tr>
<tr><td>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이직자</td><td>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③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 서류의 제출이 불가한 경우 근로(연봉)계약서상의 총 급여 월할 계산하여추정</td><td>①,②,③ 해당직장
④ 국민연금공단</td></tr>
<tr><td rowspan="3">휴직</td><td>전년도 일부 기간 휴직</td><td>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직인날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td><td rowspan="3">①,② 해당직장</td></tr>
<tr><td>전년도 전체기간 휴직 후
금년도 복직</td><td>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금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직인날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td></tr>
<tr><td>월평균소득이 추정이
불가능한자 (계속휴직)</td><td>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본인과 동일한 직장/직급/호봉인 사람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서 월평균 소득 추정
※ 서류제출이 어려울 경우 휴직 전 정상재직기간의 근로계약서나 월별급여명세표 혹은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td></tr>
<tr><td colspan="2">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학원강사, 보육교사 등)</td><td>① 재직증명서
②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직인날인 된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td><td>①,② 해당직장</td></tr>
</table>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 ② 사업자 등록증 사본	①② 세무서
	법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②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사본)	① 세무서 ② 등기소
	간이과세자 중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①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본)	① 국민연금공단/세무서
	신규사업자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①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 국민연금공단 ②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해당회사의 급여명세표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① 세무서/해당직장 ② 해당직장
기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① 행정복지센터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	① 계약기간 및 총 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② ①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① 해당직장 ② 국민연금공단
무직자	전년도 1월1일 ~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소득이 있는 경우	①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 증명서 ② 비사업자 확인 각서(2021.01.01.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무직인 경우) ③ 금년도 월별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 해당기간의 소득이 비정규직 근로자(일용직 근로자 포함)에 해당할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일용직근로자' 소득입증 제출서류를 준용함	① 해당직장 / 세무서 ② 견본주택 ③ 해당직장
	소득이 없는 경우	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 ② 사실증명(소득세 신고사실이 없음을 확인)	① 견본주택 ② 세무서

※ 상기 소득입증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여부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음

※ 재직증명서 제출 대상자 중 소득산정 기간중에 휴직을 했던 분은 휴직 기간이 표시되도록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 모든 제증명 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사본 및 FAX수신 문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예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제출한 서류에 대해 위·변조 검증을 실시하며, 제출서류의 위·변조 확인 시 수사 기관에 고발 조치 될 수 있습니다.

※ 소득입증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입증서류[표2]

서류구분	확인자격	증빙제출서류	발급처
자격입증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해당직장 ②국민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해당직장 ②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자,자영업자가아닌자로서 과거1년이내근로소득세또는사업소득세를납부한자	①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또는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포함) ※과거 1년이내 및 해당년도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②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해당직장/세무서 ②국민건강보험공단
5개년도 소득세납부	근로자	•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5개년도 각각의 증빙서류 필요) ①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①세무서 ②해당직장

입증서류		②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1) 모집공고일 기준 연말정산하지 않은 전년도 소득세납부 증빙이 필요할 시 2) 모집공고일 기준 해당년도 소득세 납부 증빙이 필요할 시	
	자영업자	• 5개년도소득세납부증명서류로아래에해당하는서류(5개년도각각의증빙서류필요) ①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세신고자용),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2개서류모두제출	①세무서
	근로자자영업자가아닌자로서 과거1년이내근로소득세또는 사업소득세를납부한자	•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5개년도 각각의 증빙서류 필요) ①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②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1) 모집공고일 기준 연말정산하지 않은 전년도 소득세납부 증빙이 필요할 시 2) 모집공고일 기준 해당년도 소득세 납부 증빙이 필요할 시	①세무서 ②해당직장

※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 의무액이 없는 경우 포함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중 결정세액이 환급 또는 없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중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해당년도 모두)하여야 함.
※ 해당직장, 세무서 등 해당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단,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받은 경우 직인날인 불필요)
※ 소득입증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전원의 자산 입증서류

해당자격		자산입증제출서류	발급처
부동산 소유현황' 이 있는 경우	필수	①부동산소유현황(세대원별각각발급) ②등기부등본(*부동산소유현황에표시된해당부동산모두에대한등기부등본을발급) ③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해당부동산의재산세납부내역을입증하는서류)	①②등기소(대법원인터넷등기소포함) ③행정복지센터
	추가(해당자)	④공동(개별)주택공시가격확인원(*소유부동산이건축물대장상주택인경우) ⑤개별공시지가확인원(*소유부동산이토지이거나단독 • 공동주택을제외한일반건축물(상가,오피스텔등)인경우 ⑥건축물시가표준액조회결과(*'위택스>지방세정보>시가표준액조회'에서건축물시가표준액조회결과를인쇄하여제출	④행정복지센터 ⑤행정복지센터 ⑥위택스(www.wetax.go.kr)
부동산 소유현황' 이 없는 경우	필수	①대법원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부동산소유현황'조회결과를인쇄하여제출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추첨제로 청약하고 자산기준 충족을 입증해야 하는 주택공급신정자는 상기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제증명 서류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모두 표기되어야 하며, *표시 및 누락시 접수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가점제/ 추첨제)	○		무주택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본인	• 무주택 입증서류를 무주택 서약서로 대체, 견본주택 비치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용도:아파트 계약용(본인발급)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발급분은 절대 불가함, 서명인증서(외국인에 한함) ※ 본인에 한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가능하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접수 및 대리계약 불가 ※ 견본주택 청약신청자(정보취약계층)는 청약접수 시 제출
	○		인감도장	본인	•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인감도장 일치 여부 확인) ※ 인터넷 청약 신청한 당첨자는 계약 시 지참 필수 ※ 견본주택 청약신청자(정보취약계층)는 청약접수 및 계약 시 지참 필수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본인 서명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으로 확인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본인 등본 발급 유의사항과 같이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본인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변동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배우자	• 재혼가정의 자녀(본인의 친자녀가 아닌 자녀)로서 당첨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주민등록표등본 상 당첨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 본인 및 배우자, 세대우너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서	본인	•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항, 제23조 2항 7호에 의거 해외거주기간 확인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 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국내 거주기간 확인 (청약자만 생업상(단신부임) 해외 체류(90일초과)중일 경우 국내 거주자로 인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해당지역 거주요건 : 대전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복무확인서	본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이 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 신청한 경우 군복무 기간(10년이상)명시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만 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해외체류(단신부임) 관련 증빙서류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8항에 의거 당첨자(청약신청자) 본인만(혼자)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국외에 현재 체류 중이거나, 체류한 경우로서 해당 해외 체류 기간을 국내 체류기간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아래표 '해외근무자(단신부임) 증빙서류' 참조
		○	장애인등록증 등	해당자	• 청약시 최하층우선배정을 신청하신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인 장애인(장애인등록증)인 경우 ※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임을 증빙하고자 하는 경우
가점제 추가 서류		○	출입국사실증명서	직계존·비속	• 직계 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기록대조일을 해당 부양가족의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 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직계 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 -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직계 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사항)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만30세 이상 미혼의 피부양 직계비속을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변동사유 및 발생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1년 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변동사유 및 발생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만18세 이상 미혼의 피부양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가 세대분리된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제증명 서류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모두 표기되어야 하며, *표시 및 누락시 접수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수	추가 (해당자)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당첨자	• 용도: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또는 아파트 계약용(본인발급)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발급분은 절대 불가함, 서명인증서(외국인에 한함)
	○		위임장	당첨자	• 견본주택 비치,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대리인 신분증, 도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내거소신고증(재외동포), 외국인등록증(외국인)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소명자료)		○	사업주체가 필요시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여부 증명서류	• 주택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 기준에 따른 해당 서류로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서 정하는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기타 증명 서류 ※ 일반 주택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포함) ※ 무허가 주택 :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한 무허가 건물임을 확인하는 공문(무허가건물확인서) ※ 폐가, 멸실 주택 :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폐가 예정이나, 멸실 확인 가능한 서류(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 : 건축물대장에 공동(개별) 주택공시가격 확인원 포함하여 발부 또는 주택공시가격확인서 발급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당첨자 및 세대원의 소유 주택현황 사례가 다양하여 사업주체가 추가로 증빙을 요구하는 서류
				당첨사실 소명 등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인정 서류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급분에 한하며, 주택공급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 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여부,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등을 위해 모두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서류발급 시 필히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직장에서 발급되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직인 날인 필요합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해외근무자(단신부임) 입증서류(단신부임 청약신청 및 당첨자는 상기 공통서류 외 추가 제출)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		해외근무증빙서류	본인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 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반드시제출) : ① 비자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 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 관련 서류 증빙이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 사정 불인정
○		출입국사실증명서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 배우자 및 세대원이 생업 등으로 해외 체류 여부 확인(출생년도부터 현재까지 기간지정으로 발급)
	○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본인 및 세대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 국가 확인 불가능한 경우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 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당첨자(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 연간 183일을 초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관한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Ⅶ 계약 체결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구분	계약기간	계약장소
당첨자 계약 체결 (특별공급/일반공급)	2022.01.09(월) ~ 2022.01.11.(수)	견본주택(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4-16)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자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납부계좌	예금주
분양대금 납부계좌	1차 계약금(최초 계약시)	하나은행	1129-48722-25037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2차 계약금,중도금, 잔금	계약 체결 시 세대별로 개별 계좌부여 (가상계좌)		

※ 상기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는 가상계좌로 부여되며 **모계좌(하나은행 112-910034-74504 예금주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로 관리됩니다.

- 세대별 분양대금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시 세대별 공급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입니다.(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계약금 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견본주택에서 수납 불가)

※ 지정된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입금 시 반드시 동호수 및 계약자명을 기재(무통장 입금 시 예시 : 401동 1503호 계약자 → '4011503홍길동' / 403동 702호 계약자 → '4030702홍길동')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및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합니다.

※ 상기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위 계좌로 입금된 분양대금에 한하여 공급대금의 납부를 인정하며, 사업주체의 동의 없이 분양대금이 계좌로 입금되지 아니하는 어떠한 형태의 입금 및 납부도 이를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분양대금 전액이 동 계좌로 납부된 경우에 한하여 분양목적물의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합니다.

※ 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하여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착오입금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구비서류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계약시	○		계약금 입금 증빙서류	본인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확인증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용도 : 주택공급계약용(본인 발급용) ※ 자격확인 서류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인감도장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외
	○		전자수입인지	본인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발급 후 사본 제출 수입인지 세액 : 1억원 이상~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수입인지 구입처> - 오프라인 : 우체국·은행(해당 기관 영업시간에 방문하여 구입) - 온라인 : 전자수입인지(e-revenuestamp.or.kr) 사이트에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출력
		○	당첨 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	본인	▪ 자격확인 서류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일체	본인	▪ 자격확인 서류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제3자 대리인 계약 위임 시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신청 불가, 용도란 아파트 계약 위임용 기재 ※ 본인 발급용
	○		위임장	본인	▪ 견본주택에 비치
	○		대리인 신분증, 인장	대리인	▪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상기 모든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2.09)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전자수입인지(인지세 납부)를 구매하여 계약체결 시 반드시 지참해주시기 바라며, 계약체결 시까지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지 않으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9항에 의거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 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자의 청약관련 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사업주체에서 당첨자에 한하여 세대주, 거주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와 다르게 당첨되어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부적격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②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자로 관리합니다.[부적격당첨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1)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주택소유현황 등)을 허위 또는 착오 기재하여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2)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며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포함하며,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정당첨자를 판명합니다.

- 청약접수 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아파트의 당첨을 취소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 시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 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부동산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으로 수입인지(기재금액 1억원 이상~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10억을 초과하는 경우 35만원)를 계약서 작성시점에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해당 수입인지는 소유권이전등기 시 필수 제출 서류로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부적격당첨자의 명단관리 등(「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 사업주체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제58조 3항에 의거 당첨일로부터 수도권은 1년, 수도권 외의 지역은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위축지역은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천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공급 신청하려는 주택의 지역 기준)

- 사업주체는 부적격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제57조 제7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①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함.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②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 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금융관련 정부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 금융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 본 아파트는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부정책, 대출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적격대출 시 중도금 대출이자와 관련하여서는 중도금 이자후불제를 적용하며, 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따라 중도금 대출이자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직전 이자납부일까지는 사업주체가 계약자를 대신하여 납부하고, 이후 발생하는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기로 한다. 또한 계약자가 잔금 납부시 사업주체가 대신하여 납부한 중도금 이자후불제에 따른 대출이자를 사업주체에게 지급하여야 입주가 가능하며, 입주지정기간 내 미납시에는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자, 대출규제 대상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내에 납부하여야(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됨)하며, 이 경우 이자후불제 조건에 대한 요구를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사업주체는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분양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금융관련 정부정책, 대출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을 감안한 대출(이하"적격대출") 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 취급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 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금융관련 정부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별도로 통보할 의무가 없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분양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분양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이자후불제 조건에 대한 요구를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사업주체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 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율에 따른 중도금 납부 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분양권 전매 요청 시 해당 주택의 사업주체 및 대출 취급기관은 양수인의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취급기관 또는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양수인이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에서 중도금을 대출받았을 경우 준공 후 소유권 이전등기 및 대출은행의 1순위(제2금융권에서 추가대출을 받은 경우 제2금융기관의 2순위 포함) 근저당 설정 시까지 위 표시 부동산에 임대차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금액은 준공 후 후취담보 취득 시 담보금액 부족 등의 사유로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수분양자 입주 시 잔금납부 관련하여 별도의 대출을 취급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하여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Ⅷ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 계약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발코니 확장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시	2023.07.20	입주지정일
84A	33,000,000	3,300,000	3,300,000	26,400,000
84B	29,000,000	2,900,000	2,900,000	23,200,000
84C	27,000,000	2,700,000	2,700,000	21,600,000
84D	31,000,000	3,100,000	3,100,000	24,800,000
105	37,000,000	3,700,000	3,700,000	29,600,000
108	37,000,000	3,700,000	3,700,000	29,600,000
149	53,000,000	5,300,000	5,300,000	42,400,000
162	49,000,000	4,900,000	4,900,000	39,200,000
174	54,000,000	5,400,000	5,400,000	43,200,000

■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 및 납부 방법

구분		금융기관	납부계좌	예금주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	계약금	하나은행	5599-04094-80437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중도금, 잔금	계약 체결 시 세대별로 개별 계좌부여(가상계좌)		

- 추가 선택 품목 납부계좌는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는 가상계좌로 부여되며 **모계좌(하나은행 559-910042-92404 예금주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로 관리됩니다.

- 세대별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시 세대별 공급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입니다.(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수표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401동 1001호 계약자 → '4011001홍길동' / 401동 401호 계약자 → '4010401홍길동' - 납부주체가 당첨자(계약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업 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지정된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급금액은 인정치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기간에 따른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 입금자의 착오입금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계약자(입금자)는 이에 대하여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 유의사항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고,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일부 유무상 옵션 반영) 세대를 전시하였으며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공간 활용도가 저하되거나 일부 실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고,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일괄 확장(일부 실 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발코니의 위치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 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액범위 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2010.02.18. 개정 시행)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 확장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자재 발주 등의 문제로 변경계약이 불가능합니다.
(전매시에도 최초 양도인의 발코니 확장여부 계약따른 양수인은 자재발주 등의 문제로 변경계약 불가함)
- 확장 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확장과 관련된 마감자재 등은 제품의 품절, 품귀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홈페이지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으며, 인접 상층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 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 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 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는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을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경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하며,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색상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창호는 사업승인변경 도서에 준하여 설치되며,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습니다.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 등이 주택형별 또는 각호별로 다를 수 있으며, 구조 및 기능 만족을 위하여 마감재료의 특성과 규칙이 다를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하여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창호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 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주기적인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을 요구할 수 없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환기 덕트 포함)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 시 발코니 변화층의 경우 발코니 변화 세대 간 조건에 따라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 세대의 확장 발코니 부위에 단열재 등이 시공될 수 있으며, 천장 돌출, 벽체 돌출, 조명 위치 변경, 일부 배관 노출 등의 마감 상태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결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가 시공사와 무관하게 개별적으로 실내 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시공(관계법령에 따라 입주자 등의 동의 필요)하는 경우,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 시공한 부위에 발생한 하자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주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마감재 오염 또는 훼손, 결로, 단열, 주변 세대 피해 등)
- 발코니에 설치되는 발코니 난간 및 창호 등의 형태 및 사양, 제조사와 모델, 색상/디자인 등은 기능 및 미관개선 등을 위하여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 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시공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 본 아파트 시행자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시행자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비확장 시 창호 및 각종 가구류(주방가구, 일반가구, 선반가구 등)와 전동빨래건조대는 확장 시 제공 품목 등 구성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이버 견본주택 등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미선택 시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인접세대(좌/우, 상/하부 세대 등)가 발코니 비확장일 경우 추가 단열공사를 위해 해당부위 벽 또는 천장이 돌출 시공될 수 있으며, 커튼박스 규격, 천장 기기류(전등, 환기구, 스프링클러 등) 및 스위치 등의 배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발코니 확장시에만 계약 가능)

1)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주택형	에어컨 설치공간	선택안	선택사항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제조사	비고
						계약시	**2023.07.20**	**입주지정일**		
전실	84A/B/C/D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5개소)	5대	일반	8,690,000	869,000	869,000	6,952,000	LG휘센	
			5대	고급(공기청정기능포함)	10,190,000	1,019,000	1,019,000	8,416,000		
	105/108		5대	일반	9,020,000	902,000	902,000	7,216,000		
			5대	고급(공기청정기능포함)	10,520,000	1,052,000	1,052,000	8,416,000		
	149/162	거실(2), 주방, 안방, 침실1, 침실2, 알파룸(7개소)	7대	일반	12,760,000	1,276,000	1,276,000	10,208,000		
			7대	고급(공기청정기능포함)	14,860,000	1,486,000	1,486,000	11,888,000		
	174	거실(2), 주방, 안방, 침실1, 침실2, 알파룸, 가족룸 (8개소)	8대	일반	15,070,000	1,507,000	1,507,000	12,056,000		
			8대	고급(공기청정기능포함)	17,470,000	1,747,000	1,747,000	13,976,000		
거실/안방/주방	84A	거실,주방,안방, (3개소)	3대	일반	5,170,000	517,000	517,000	4,136,000		
			3대	고급(공기청정기능포함)	6,070,000	607,000	607,000	4,856,000		
		거실,주방,안방 (3개소, 알파룸 미선택시 거실용량증가)	3대	일반	5,280,000	528,000	528,000	4,224,000		
			3대	고급(공기청정기능포함)	6,180,000	618,000	618,000	4,944,000		
	84B/C/D	거실,주방,안방, (3개소)	3대	일반	5,170,000	517,000	517,000	4,136,000		
			3대	고급(공기청정기능포함)	6,070,000	607,000	607,000	4,856,000		
	105/108		3대	일반	5,720,000	572,000	572,000	4,576,000		
			3대	고급(공기청정기능포함)	6,620,000	662,000	662,000	5,296,000		
	149	거실(2), 주방, 안방	4대	일반	7,590,000	759,000	759,000	6,072,000		
			4대	고급(공기청정기능포함)	8,790,000	879,000	879,000	7,032,000		
	162		4대	일반	7,810,000	781,000	781,000	6,248,000		
			4대	고급(공기청정기능포함)	9,010,000	901,000	901,000	7,208,000		
	174		4대	일반	8,360,000	836,000	836,000	6,688,000		
			4대	고급(공기청정기능포함)	9,560,000	956,000	956,000	7,648,000		

. 시스템 에어컨 옵션 계약은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시스템 에어컨 옵션금액은 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미선택 시 거실에는 스탠드 에어컨용 냉매배관 및 콘센트, 안방에는 벽걸이 에어컨용 냉매배관 및 콘센트가 시공되며, 시스템 에어컨을 위한 천장 냉매배관 및 드레인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및 실외기 설치 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실외기는 별도로 구획된 실외기실에 설치됨)
. 시스템 에어컨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점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설비, 구조 등의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설치 시 기본 제공되는 냉매배관과 콘센트는 시공되지 않으며, 해당 공사비는 옵션금액에 차감반영 되어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시공 시 설치되는 제품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수준으로 변경 될 수 있으며, 기선정된 제품의 형태·설치 위치 등의 세부사항은 분양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 시, 기 선정된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각 실 시스템 에어컨은 설치되어 있는 방의 냉방부하를 만족하는 용량으로 가변형 벽체를 확장할 경우에는 실면적이 증가하여 에어컨 용량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설치안에 따라 실외기 용량이 상이하므로, 추후에 실내기만을 추가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시스템 에어컨 신청세대는 기본 제공인 냉매배관 및 에어컨 실내기용 전기설비 설치공사를 제외하며, 시스템 에어컨 판매가는 해당실의 냉매배관 및 전기설비 설치공사비를 감액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 실내기 위치는 견본주택과 일부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에어컨 용량은 실면적에 상응하는 냉방부하에 따라 결정되며 동일 주택형이라도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시스템 에어컨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선택품목에 대한 추가 옵션계약이 불가하며, 공급계약 체결기간과 별도로 옵션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일정은 추후 통보예정)
. 상기 추가선택품목은 본 주택의 디자인 컨셉에 따른 품목으로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니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반드시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선택 시 사업주체가 선정한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서 시스템 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는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 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습니다.

2) 가전옵션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주택형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제조사	비고
			계약시	**2023.07.20**	**입주지정일**		
빌트인 식기 세척기	전타입	1,250,000	125,000	125,000	1,000,000	SK 매직	
3 구 인덕션		1,150,000	115,000	115,000	920,000	LG	
의류관리기 (드레스룸 설치)	84A/B/C/D	2,150,000	215,000	215,000	1,720,000	LG[크림화이트]	주택형에 따라 색상이상이하므로 견본주택 확인 후 계약필요
	105/108/149/162/174	2,150,000	215,000	215,000	1,720,000	LG[블랙틴트미러]	
빌트인 냉동고/냉장고/김치냉장고	84A/B/C/D	5,110,000	511,000	511,000	4,088,000	LG[오브제미스티베이지]	주택형에 따라 색상이상이하므로 견본주택 확인 후 계약 필요
	105/108/149/162/174	5,590,000	559,000	559,000	4,472,000	LG[오브제 솔리드실버]	

. 추가선택품목 시공은 계약자가 임의로 시공 위치 지정 및 마감재 선택이 불가하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냉동고/냉장고/김치냉장고는 일괄공급 옵션이니, 이 점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가전 선택품목은 주방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가 주택형마다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점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 가전옵션 계약 체결 이후 가전옵션 제품 특성 상 시장 판매가가 감액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차액이나, 감액에 대한 계약 해지 및 위로금 지급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중 일부품목은 주택형별 사양이 다르므로, 해당 주택형의 형태를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본 공사 시 형태, 재질, 사양 등이 동급 수준의 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3) 기타옵션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주택형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비고
					계약시	**2023.07.20**	**입주지정일**	
바닥특화	[ALT.1]	거실/주방/복도 _ 외산 포세린 타일, 침실 _ 일반 강마루	84A	2,330,000	233,000	233,000	1,864,000	
			84A+알파룸	2,700,000	270,000	270,000	2,160,000	
			84B	2,150,000	215,000	215,000	1,720,000	
			84C	2,070,000	207,000	207,000	1,656,000	
			84C+복도펜트리	2,170,000	217,000	217,000	1,736,000	
			84D	2,300,000	230,000	230,000	1,840,000	
	[ALT.2]	거실/주방/복도 _ 외산 포세린 타일, 침실 _ 광폭 브러쉬 강마루	84A	2,640,000	264,000	264,000	2,112,000	
			84A+알파룸	2,920,000	292,000	292,000	2,336,000	
			84B	2,460,000	246,000	246,000	1,968,000	
			84C	2,380,000	238,000	238,000	1,904,000	
			84C+복도펜트리	2,460,000	246,000	246,000	1,968,000	
			84D	2,600,000	260,000	260,000	2,080,000	
	[ALT.1]	거실/주방/복도/다용도실 _ 외산 포세린 타일, 침실 _ 일반 강마루	105/108	2,950,000	295,000	295,000	2,360,000	
			105/108+주방펜트리	3,080,000	308,000	308,000	2,464,000	
			149	4,210,000	421,000	421,000	3,368,000	
			162	4,270,000	427,000	427,000	3,416,000	
			174	4,920,000	492,000	492,000	3,936,000	
	[ALT.2]	거실/주방/복도/다용도실 _ 외산 포세린 타일, 침실 _ 광폭 브러쉬 강마루	105/108	3,360,000	336,000	336,000	2,688,000	
			105/108+주방펜트리	3,430,000	343,000	343,000	2,744,000	
			149	4,760,000	476,000	476,000	3,808,000	
			162	4,870,000	487,000	487,000	3,896,000	
			174	5,630,000	563,000	563,000	4,504,000	
	거실/주방/복도/침실 _ 광폭 브러쉬 강마루		84A	830,000	83,000	83,000	664,000	다용도실 국산 자기질 타일 시공
			84B	800,000	80,000	80,000	640,000	
			84C	770,000	77,000	77,000	616,000	
			84D	820,000	82,000	82,000	656,000	
			105/108	990,000	99,000	99,000	792,000	
			149	1,430,000	143,000	143,000	1,144,000	
			162	1,480,000	148,000	148,000	1,184,000	
			174	1,740,000	174,000	174,000	1,392,000	
거실벽 外 특화	거실 아트월+소파뒷벽 _ 외산 세라믹 타일 복도벽_가구판넬설치		84 A	13,190,000	1,319,000	1,319,000	10,552,000	
			84A+알파룸	12,760,000	1,276,000	1,276,000	10,208,000	
			84B	13,240,000	1,324,000	1,324,000	10,592,000	
			84C	14,600,000	1,460,000	1,460,000	11,680,000	
			84C+복도펜트리	15,430,000	1,543,000	1,543,000	12,344,000	
			84D	12,820,000	1,282,000	1,282,000	10,256,000	
	거실,주방 아트월 _ 외산 세라믹 타일 복도벽_가구판넬설치		105/108	10,480,000	1,048,000	1,048,000	8,384,000	
	거실3면+주방+복도1면 외산 세라믹 타일 복도벽_가구판넬설치		149	50,180,000	5,018,000	5,018,000	40,144,000	
			162	61,410,000	6,141,000	6,141,000	49,128,000	
	거실3면+복도1면 _ 외산 세라믹 타일 복도벽_가구판넬설치		174	45,950,000	4,595,000	4,595,000	36,760,000	
천장/조명 특화	거실 _ 특화거실등(라인등 직부+간접) +직부형 간접등 주방 _ 우물천장+간접조명+매입등+라인매입등+직탁팬던트등 현관 _ 라인조명센서등+직부형간접등 욕실 _ 욕실 라인등 + 욕실 다운라이트		84 A	4,830,000	483,000	483,000	3,864,000	
			84A+알파룸	6,880,000	688,000	688,000	5,504,000	
			84B	4,910,000	491,000	491,000	3,928,000	

		84B(공간분리형)	4,970,000	497,000	497,000	3,976,000	
		84C	5,730,000	573,000	573,000	4,584,000	
		84C+복도펜트리	5,640,000	564,000	564,000	4,512,000	
		84D	5,010,000	501,000	501,000	4,008,000	
		84D+알파룸	5,010,000	501,000	501,000	4,008,000	
	거실 _ 간접조명+특화거실등(디자인등) +직부형 간접등+매입등 주방 _ 우물천장+간접조명+라인 매입등+직부형 간접등+식탁 직부등 현관 _ 라인조명센서등+직부형간접등 욕실 _ 욕실 라인등 + 욕실 다운라이트	105	6,280,000	628,000	628,000	5,024,000	
		108	6,350,000	635,000	635,000	5,080,000	
		149	5,350,000	535,000	535,000	4,280,000	
		162	5,610,000	561,000	561,000	4,488,000	
		174	6,400,000	640,000	640,000	5,120,000	
평면 특화	침실2 알파룸 경량벽체+유리슬라이딩도어(시스템가구 미제공)	84B	1,300,000	130,000	130,000	1,040,000	
	복도 팬트리 경량벽체+가구도어+시스템선반(포스트형)	84C	1,320,000	132,000	132,000	1,056,000	
	침실2 드레스룸 경량벽체+가구도어+시스템선반(포스트형)		1,330,000	133,000	133,000	1,064,000	
	안방 알파룸 유리슬라이딩도어(시스템가구미제공)	84D	1,310,000	131,000	131,000	1,048,000	
	알파룸 대형 드레스룸 확장형 _ 벽판넬형시스템가구	105/108	13,020,000	1,302,000	1,302,000	10,416,000	
	알파룸 주방 펜트리 확장형 유리슬라이딩도어(주방측)+시스템선반(포스트형)		7,020,000	702,000	702,000	5,616,000	
	복도펜트리_시스템선반(포스트형) + LPM 가구도어	149	1,500,000	150,000	150,000	1,200,000	
	복도장식장_유리도어 + 조명매입	162	7,960,000	796,000	796,000	6,368,000	
		174	7,580,000	758,000	758,000	6,064,000	
드레스룸 특화	안방 드레스룸1 (슬라이딩도어 +시스템가구 등)	84A	6,280,000	628,000	628,000	5,024,000	
		84B	7,500,000	750,000	750,000	6,000,000	
		84C	9,720,000	972,000	972,000	7,776,000	엑세서리 독립하부장 추가
		84D	5,770,000	577,000	577,000	4,616,000	
		105/108	5,800,000	580,000	580,000	4,640,000	
		149	5,220,000	522,000	522,000	4,176,000	
		162	12,440,000	1,244,000	1,244,000	9,952,000	엑세서리 독립하부장 추가
	안방 드레스룸1 (시스템가구 + 유리장식장 등)	174	10,650,000	1,065,000	1,065,000	8,520,000	
	안방 드레스룸2 (슬라이딩도어 +시스템가구 등)	149	3,830,000	383,000	383,000	3,064,000	
		162	3,230,000	323,000	323,000	2,584,000	
미세먼지 방충망	미세먼지방충망	84A	2,510,000	251,000	251,000	2,008,000	
		84B	1,950,000	195,000	195,000	1,560,000	
		84C	1,900,000	190,000	190,000	1,520,000	

		84D	2,110,000	211,000	211,000	1,688,000	
		105	2,980,000	298,000	298,000	2,384,000	
		108	3,180,000	318,000	318,000	2,544,000	
		149	4,870,000	487,000	487,000	3,896,000	
		162	4,290,000	429,000	429,000	3,432,000	
		174	5,150,000	515,000	515,000	4,120,000	
현관 특화	신발장 _ 고급형 웨이브판넬 마감 및 디자인 고급화 현관창고_유리슬라이딩도어+시스템선반(벽부형) 바닥_외산포세린타일	84A	4,490,000	449,000	449,000	3,592,000	
		84B	5,160,000	516,000	516,000	4,128,000	
		84C	4,950,000	495,000	495,000	3,960,000	
		84D	4,810,000	481,000	481,000	3,848,000	
		105/108	6,300,000	630,000	630,000	5,040,000	
		149	5,510,000	551,000	551,000	4,408,000	
		162/174	6,720,000	672,000	672,000	5,376,000	
주방 특화	수입가구(상하부장,아일랜드장)+국산가구(냉장고장,TL장) +외산 싱크볼, 수전+고급형 후드 +외산 세라믹 타일 주방벽, 상판	84A	39,210,000	3,921,000	3,921,000	31,368,000	
		84B	39,800,000	3,980,000	3,980,000	31,840,000	
		84C	34,020,000	3,402,000	3,402,000	27,216,000	
		84D	38,640,000	3,864,000	3,864,000	30,912,000	
	수입가구(상하부장,아일랜드장)+국산가구(냉장고장,TL장) +상부클림버장+외산 싱크볼, 수전+고급형 후드 +외산 세라믹 타일 주방벽, 상판	105/108	57,500,000	5,750,000	5,750,000	46,000,000	
	수입 가구+외산 싱크볼,수전+고급형 후드 +외산 세라믹 타일 주방벽, 상판	149	101,180,000	10,118,000	10,118,000	80,944,000	
		162	74,790,000	7,479,000	7,479,000	59,832,000	
		174	149,850,000	14,985,000	14,985,000	119,880,000	
욕실 특화	벽,바닥 _ 외산 포세린 타일 디자인상부장(또는거울)+하부장+니치월장(105,108기준) +외산도기,수전+액세서리+디자인 특화 샤워부스 및 욕조+라인등	84A	16,450,000	1,645,000	1,645,000	13,160,000	
		84B	16,200,000	1,620,000	1,620,000	12,960,000	
		84C/D	16,230,000	1,623,000	1,623,000	12,984,000	
		105/108	20,690,000	2,069,000	2,069,000	16,552,000	니치월장 추가
		149	27,240,000	2,724,000	2,724,000	21,792,000	
		162	28,100,000	2,810,000	2,810,000	22,480,000	
		174	37,050,000	3,705,000	3,705,000	29,640,000	

4) 무상옵션

구분	주택형	기본형	선택형
거실	84A	알파룸 가변형 벽체 미설치	알파룸 가변형 벽체 설치
욕실1	84A, 84B, 84C, 84D / 105 / 108	욕조	샤워부스

. 거실+주방+복도의 바닥 마감재 유상옵션 선택 시 바닥에 물기 등이 묻어있을 경우 미끄러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제품 및 줄눈 등의 오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바닥 타일의 시공은 계약자가 임의로 시공위치 지정이 불가하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타일의 패턴이 일정하지 않아 본공사 시 견본주택과 타일패턴이 다를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타일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타사제품 포함)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타일과 강마루 또는 이질재가 만나는 부위는 견본주택과 다르게 별도의 줄눈재가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시공은 계약자가 임의로 시공 위치 지정 및 마감재 선택이 불가하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추가선택품목은 품목별 일괄시공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설비 및 인테리어 설계상 연관되어 있어 개별 아이템별 신청이 불가함).
• 일부 무상선택품목 미선택시에는 기본형으로 설치됩니다.
• 천장/조명특화 옵션 선택시 기본조명은 설치되지 않으며, 유상옵션 금액은 기본조명에서 천장/조명특화 유상옵션 조명으로 변경 기준입니다.

■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 공통사항
-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 공사는 별도 계약품목으로 분양계약자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이며,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에는 통합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관할관청으로부터 관련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은 발코니 확장 계약시에만 선택할 수 있으며, 일정시점 이후 시공을 위하여 소요자재를 선 발주를 해야 하므로 계약 후 선택사항 변경 및 해제가 불가합니다.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이 불가하며, 계약체결 최종 일정은 별도 통보 예정임)
-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 선정된 제품의 형태. 설치 등의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 선택시 사업주체가 선정한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 계약 대금에 대하여 공급주체는 소비자 상대 업종이 아니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하며,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3조1 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합니다.
- 아파트 공급계약과는 별도의 계약사항이고, 아파트 공급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옵션계약도 자동으로 해제 또는 취소됩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계약 전 위치 확인 요망)
- 추가 선택품목에 따라 등기구, 배선기구, 스위치 등의 위치, 수량, 종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본 아파트 여건에 맞게 설치되는 품목으로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선택하시고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 상세내용은 본 공고문 표기와 설명에 한계가 있으므로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필히 확인하시고 설명을 들으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타입별 추가 선택품목의 상품구성, 적용위치, 형태 등이 상이하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다른 타입의 품목은 설치 불가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공사 시작 이후 자재발주 및 시공상의 문제로 계약변경 및 해제가 불가하며, 해지 시 위약금과 원상회복비용(실손해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Ⅸ 단지여건 및 유의사항

※ 청약자 및 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전에 반드시 확인·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일부 영향이 발생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사항
• 본 모집공고의 제반내용 및 건립된 견본주택은 승인된 사업승인 도면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인·허가 내용의 변경에 따라 다소 변경 될 수 있음. 이 경우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금액이 없음)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 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2009.4.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당사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입주 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주택법에 의거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 목록표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평면도 및 시방서는 견본주택에 열람 가능토록 비치되어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세대분리, 벽체삭제 등 불법 구조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대지지분은 사용면적 등을 감안하여 대지지분을 배분하였으며, 공동주택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습니다.
- 공동주택(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등의 비주거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과 일반분양시설인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은 동일한 사업부지에 대지경계(구획)가 없는 공유토지이며, 대지지분을 공유하므로 향후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일부 세대는 공사 시행 중에 시공을 위해 샘플하우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니 이점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노동조합의 파업. 태업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 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입주지연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자는 준공 후 입주자의 원활한 입주 업무 지원, 신속한 하자보수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아파트 및 부대시설의 일부를 일정기간(입주업무는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최대 5개월, 하자보수 업무는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최대 27개월)동안 입주지원센터(가칭) 및 현장A/S센터(가칭)로 사용하며, 시공자에게 이에 따라 발생하는 시설 사용에 대한 일체비용(임대료 등) 및 시설 이전・축소 등을 요구할 수 없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합니다.
- 입주 시 관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이 부과됩니다.
-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개발계획은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추후 이에 대한 일부 영향이 발생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유해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 시 견본주택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일부 영향이 발생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법인·단체 포함)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공급계약이나 매매는 부동산 거래신고로 갈음하고 증여, 교환 등만 해당 합니다.
 - 외국인이 상속 또는 경매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 대한민국에서 외국으로 국적이 변경된 경우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등 계속보유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부동산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 분야별 도서 또는 홍보물 상호간 오류로 인하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공사용 도서의 구체화 (세부도서작업) 과정에서 인·허가도서의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수정 및 성능개선과 품질 제고를 위하여 본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시행자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시행자에게 위탁하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시공 시 대지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 및 조경면적, 자연지반면적, 인공지반 녹지면적 등은 축소 또는 증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조경(식재, 시설물, 공간계획,, 포장 등)은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측량 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 위치 등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대지의 레벨차이에 의해 도로와 본 건물의 레벨 차이가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인·허가 시 제시된 시험성적서는 단순 샘플이며, 실제 적용은 동등 수준의 성능을 가진 제품이나 기술로 변경(설계변경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사업지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해당사항 없으며, 입주 후 차량증가로 인한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 이후 단지 명칭(인·허가청의 고유 마을명칭), 경관계획(외관, 외부색채, 그래픽, 조경, 옥외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 색채계획 등은 인·허가청의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및 비주거시설 설비시설물로 부터의 진동, 소음, 빛, 냄새, 시야간섭 등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민편의를 위해 계획된 지상3층 부대시설 및 조경공간으로 인하여 일부세대는 소음, 빛, 냄새, 시야간섭 등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의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분양 홍보물(모형, CG, 인쇄물 등)상에 설명된 것과는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에 대하여 일부 영향이 발생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의 오픈 시기 및 입점업체는 미정으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오픈 시기 및 입점업종과 관련한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동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으로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관리주체선정,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관리·운영하여야 하고, 주택 외 시설의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단이 관리 하여야 합니다.
- 일부 세대에서는 문주, 쓰레기집적소, DA, 실외기 설치공간 등 외부 구조물에 의한 조망권, 일조권 침해 및 구조물 빛 반사에 의한 빛공해가 발생 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 상황에 따라 추후 단지명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는 문주로 인해 조망권, 일조권 침해가 발생 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합니다.
- 분양계약 체결 후 연 2회(반기1회) 이상 입주예정자("계약자"를 말함)를 공사 현장으로 초청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통지는 설명회 예정일 10일 전까지 우편으로 하고, 설명회 당일 미참석자에 대한 별도의 설명회는 하지 않습니다. 단, 코로나 확산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설명회를 생략, 축소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입주자 등의 편의 차원으로 인근 선화동 일원에서 추진 중인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주동(101동 - 105동) 명칭을 401동~405동 또는 501동~505동 등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관련

- 견본주택(분양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든 모형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단지 모형도의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등의 외벽 색채 및 디자인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업승인 및 착공신고에 의거하여 제작된 모형으로 실제 공사 시 일부 사항이 설계변경(입주자 동의 없이 진행 함)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의 건립타입 VR 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 동영상이므로 전시품목 안내 및 견본주택을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천장형 에어컨은 관람객을 위한 냉난방 장비이며, 본 공사시에는 옵션선택 시 냉방전용 장비가 적용됩니다.
- 견본주택은 84A, 105 타입이 설치되어 있으며, 미건립 타입은 인쇄물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전에 평면 형태, 발코니 변화여부, 가구배치, 실면적 등 견본주택 설치 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계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미건립 타입의 조명기구는 세대의 형태에 따라 견본주택의 조명기구와 다를 수가 있습니다.
- 견본주택 건립타입 외 견본주택 미건립 타입의 내부 치수 및 마감재의 사양은 견본주택 건립평형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에 이에 따른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인쇄물,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또는 사진은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용승인 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탑승위치 등)은 견본주택에 비치된 사업승인도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최종 시공은 사용승인도면에 의거하여 시공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미건립 세대 평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상황,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배관, 배선 등과 출입문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 본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단지이미지상의 조경계획, 조경시설, 식재배치, 시설물계획, 포장문양 등 제반 사항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로서 실제 이미지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단지이미지상의 단지 주변 표현은 현황 및 공사 예정단계의 연출이미지로,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장을 확인 및 사업주체의 계획을 확인후 청약 및 계약 하여야 합니다.
- 본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커튼, 침대, 쇼파, 아트월 등),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 시 제공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창호(프레임, 유리 등)는 견본주택 설치를 위해 생산된 제품으로 본 공사 시 제조사는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유리, 프레임 및 손잡이 등의 하드웨어는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견본주택에 설치된 온도조절기 및 바닥배수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 시 모형, 공급간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차후 미확인으로 인한 제반사항에 대한 일부 영향이 발생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및 스프링클러는 견본주택 자체의 소방시설이며, 본 공사 시 설계도면 및 화재안전기준에 의거하여 설치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분전반, 통신단자함, 배선기구류, 월패드, 스마트스위치 등은 제품의 성능, 디자인 및 기능개선을 위해 제품사양, 위치,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 및 마감자재는 실제 색상, 패턴이 상이할 수 있고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등수준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 설치된 조명은 매립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노출 등은 연출을 위한 조명으로 본 공사에 적용되지 않는 품목입니다.
- 견본주택 내 설치된 CCTV는 견본주택용으로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전시되어 있으나, 본 공사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됩니다.
- 견본주택은 확장형으로 시공되었으며, 기본형세대 선택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시공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온도조절기, 콘센트 및 조명, 바닥배수구, 욕실환풍기 등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 선택형 평면타입을 적용할 경우 조명 및 배선기구의 사양, 수량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당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즉 준공 시 확정측량으로 인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분양홍보물 관련

- 인쇄물 및 홍보물 등에 이용된 CG, 사진, 일러스트(그림) 등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분양홍보자료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향후 변경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업부지 주변 및 주변 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홍보 인쇄물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 예정 및 실행 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평면도, CG 및 이미지컷, 견본주택 내 단위세대 모형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 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 여부를 필히 확인 바랍니다.
- 각종 광고 및 홈페이지, 홍보물(카탈로그, 전단, 안내문 등) 등 홍보과정에서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은 추후 인·허가 과정이나 관계기관의 사정,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으며, 홍보물 제작과정에서 오기, 오탈자로 인하여 잘못 기재 될 수 있으니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배포된 홍보물 등은 사전 홍보시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견본주택을 확인하시어 계약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단지 이미지컷 및 전시모형은 전 세대 발코니확장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일부세대 비확장 선택시 외벽면 창호가 설치되지 않고, 함마톤 난간이 설치되어 외부 미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주후 개별 확장으로 인하여 추후 창호 색상(유리 및 프레임)이 상이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카달로그 및 홍보물 등에 이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과 견본주택 내 전시모형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 연출한 것으로 식재 및 색상, 시설물 등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견본주택. 사이버 모델하우스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 및 영상물 등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관련

- 본 아파트의 공급면적 및 대지의 공유지분은 공부정리절차, 사업계획승인변경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범위 내에서 면적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범위 내 또는 소수점 이하의 면적증감은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일부 영향이 발생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 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계약 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계약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징구)
- 본 계약 시 동일 평면이지만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 대칭될 수 있으니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타사 또는 당사 분양 아파트의 마감사항, 부대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승인 및 변경 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 시설, 조경 식재, 시설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별도 계약품목의 경우 최초 계약자의 선택에 의해 시공이 되며 이후에는 배선, 배관 등 관련 설비공사에 따라 선택 변경 및 단순변심으로 인한 해제가 불가합니다.
- 건축물의 구조물 외관에 브랜드용 광고 및 조명이 설치될 수 있으며 반드시 계약 전 이점 양지하시고 계약하기 바랍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명확히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유의사항

① 설계일반

- 견본주택에 전시되는 모형 및 이미지(조감도 등)상 표현된 단지명 및 BI는 실 시공시 현장 상황에 따라 위치, 개소수 및 사양이 변경될 수 있으며 조명설계에 따라 일부 세대에서는 야간에 눈부심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동표시 사인물, BI 등 각종 사인물의 배면에는 설치를 위한 하지틀(구조물)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당 단지는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에 건립되는 건축물로 건축법상 일조권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세대별, 위치별로 일조권 및 조망권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계약세대가 속한 동의 위치, 층, 향에 따라 일조량 및 조망에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일부세대는 영구음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을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동의 외벽에 설치된 커튼월룩 및 돌출장식물 등의 디자인은 설계 또는 시공 등의 사유로 설치여부, 위치, 범위, 크기, 색상, 디테일 등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유리의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의 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서로 상이하게 설치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계약 시 제시된 공급안내서를 포함한 조감도, 세대평면도 등의 각종 인쇄물·CG(조감도, 투시도) 및 면적, 치수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외관 및 색채는 측량결과, 각종 심의 결과(건축위원회 심의 등), 불합리한 설계의 개선 및 표현 오류, 오기 등으로 정정이 이루어질 수 있고, 구조·성능·제품의 사양은 동등 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수납가구와 주방가구, 욕실가구 및 샤워부스, 마루, 목창호, 현관문, 실외기 그릴, 각종 창호 등은 본 공사 시 입찰 결과에 따라 제조사 및 브랜드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폭과 색상이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시행사" 또는 "시행사"가 선정한 감리자가 성능시험 등을 통하여 품질 또는 성능 확인 후 현장 시공에 적합하다고 승인하여 설치한 자재 또는 제품에 대하여 시공자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따라 시공한 경우 설치(시공) 당시부터 성능미달의 제품을 설치하였다거나 시공 및 설치상의 하자가 있었음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주이후에 성능미달 사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시공자에게 품질 또는 성능미달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입주 이후 "수분양자(입주자)"의 사용에 따른 자재 또는 제품의 성능저하 발생시 "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가 유지 보수 및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 이후에 발생하는 유지 보수 및 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성능미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에게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대전시 경관계획 기준 및 인·허가 협의에 따라 주변 컨텍스트, 디자인차별화 등의 기준으로 당 단지의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등의 입면 디자인 및 마감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 및 특정 서비스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홍보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휴대폰/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 서비스 운영 및 유지 비용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탑승위치 등)은 견본주택에 비치된 사업승인도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최종 시공은 사용승인도면에 의거하여 시공됩니다.
- 공장생산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해 결정합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행사" 및 "시공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없으며 입주지연에 따른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전기/통신 맨홀 등 인입 장비의 상세계획(설치면적 및 위치, 형태, 사양, 디자인 등)은 시공 단계에서 최종 확정되며 관련 사업자와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옥탑 및 지붕에는 경관조명, 항공장애등, 태양광집광판, 안테나 등이 설치 될 수 있으며, 상세계획(설치면적 및 위치, 형태, 사양, 디자인 등)은 시공 단계에 최종 확정되며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특기시방서에 별도의 시공기준이 없는 경우 "시행사" 또는 "시행사"가 선임한 감리가 승인한 시공계획서 또는 승인자재 제조사의 시공기준에 따릅니다.
- 내화성능시험이 요구되는 공종의 경우 인증표시는 "시행사" 또는 "시행사"이 선임한 감리가 승인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입주 후 임의해체 및 부속물(디지털도어록/말밥굽 등)의 임의설치/교체에 따른 성능시험 결과는 시공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단지내 조경설계는 인·허가 및 실시설계진행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합니다.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건축물의 높이가 60m 초과시에는 지면에서 건축물의 높이 5분의4가 되는 지점에 돌침형피뢰침이 설치되어 건물외벽(특정세대 발코니앞) 미관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건축법」을 준수하였으며, 단지 내·외 인접한 건물들과 건물 입면의 입면 장식, 각종 시설물, 조경 등으로 인하여 일조권 및 조망 등의 환경권 침해가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상이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시행 및 시공사에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에는 자전거 보관소, 재활용집합창고,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DRY AREA(채광, 환기, 방습 따위를 위하여 지하에서 지상으로 낸 통풍구), 실외기 및 환기시설(부대시설용, 상업시설용), 정화조 및 정화조 배기시설 등이 설치될 예정으로 위치에 따라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시설물의 위치는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 상 기계 / 전기실, 발전기실, 급배기구, 실외기실(커뮤니티, 상업시설), 쓰레기집적소, 정화조 등 인접실에는 냄새, 소음 및 해충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 및 조경(식재, 시설물)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세대내의 위치에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바라며, 청약신청 및 입주 시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 이용 시 주동주출입구에서 거리가 먼 곳에 차량이 주차될 수 있어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종 인증과 관련하여 인증서 및 관련도면에 첨부된 자재 및 공법은 실 시공시 현장 여건 및 자재수급 여부에 따라 동등 수준의 자재 및 공법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은 확장형을 위한 합리적인 평면설계를 위하여 법정 발코니 초과면적이 일부 산입되어 있으므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주거공용공간,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 조경공간, 단지 내·외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도로, 비상차량 동선 등) 등은 실시공시 대관 인·허가 과정이나,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현장 여건에 따라 면적과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세대의 공용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었으며, 면적 계산상 소수점 다섯째 이하 자리 처리방식 차이로 인해 전체 연면적과 세대별 계약면적의 합과는 오차가 생길 수 있음. 추후 등기를 위해 면적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건립안과 설계도서가 상이한 점이 발생되는 경우 견본주택 건립안으로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단위세대 및 기타 설계변경사항이 관련 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설계변경 인·허가를 진행하며, 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상업시설, 외부장식물, 식재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 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해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저층 세대 및 부대시설의 경우 포디엄 상부의 동 출입구 형태, 외부난간 및 장식물 등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진행 및 본 공사 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과 아파트의 외관디자인(입면, 옥탑, 측벽, 몰딩, 창틀, 필로티, 공용홀, 동출입구, 캐노피, 지하출입구 등) 및 외부 시설물(DA, 자전거보관소, 쓰레기집적소, 조경, 실외기보관소 등)의 형태, 마감재 및 색상은 심의 및 법규, 디자인 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판매 및 근린생활시설과 함께 계획된 단지 특성상 이삿짐 차량은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할 수 없고, 사다리 차량을 이용할 수 없어, 지상에 주차한 후 엘리베이터로 이삿짐을 운반하여야 하니, 반드시 이를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을 진행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동(401동, 402동, 403동)의 쓰레기 수거함 및 무인택배실은 지하1층의 일부에 구획된 상업시설(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주차구역 내에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는 공동주택 입주민의 불편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합니다.

② 주변 현황/단지배치

• 하기 사항에 따라 일조·조망·사생활 침해, 소음·빛공해·분진·냄새·진동 발생 등 환경권을 침해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합니다.
- 조경식재 및 조경시설물 등의 설치로 인한 일부 일조, 조망 침해
- 가로등, 야간 조명, 단지 내· 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과 인접세대 소음, 빛공해, 사생활권 침해 등
- 단지 주변 도로, 철도, 통행로 인접 등으로 인한 소음, 진동, 분진, 빛공해, 일조·조망·사생활권 침해 등
- 단지 배치 상 쓰레기 분리수거함, 재활용 창고, 급배기시설(환기구 등),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에어컨 실외기 및 주방배기구 인접으로 인한 소음, 냄새 및 해충 등 환경권 침해
- 주변 건축물 신축, 단지 내 공용시설물, 옹벽·석축, 단지 내 휴게공간·필로티·어린이놀이터·드라이에어리어(D/A)·계단 및 엘리베이터, 기타 부대시설 등의 설치로 일조·조망·사생활권 침해, 소음 발생 등 환경권 침해
- 단지 배치계획 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 위치 및 공동주택의 특성에 따라 소음 발생, 일조·조망·사생활권 침해 등 환경권 침해

• 각종 광고 및 홍보물(견본주택, 인쇄물, 리플렛, 전단, 공급안내, 홈페이지, 신문광고 등) 등에 표시된 주변환경, 개발계획, 교통여건 및 각종 시설(도로, 공공청사, 학교, 지하철, 차도, 하천, 광장, 공원, 녹지 등)의 조성계획(예정사항)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중인 사항을 표시한 것으로 시행주체 및 관계기관의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에 접해있거나 단지주변에 있는 시설(도로, 의료시설, 종교시설, 주거시설 등)은 시공범위가 아니며, 해당 시설 계획 및 지형은 상위계획 및 사업주체의 계획 변경 등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고 변경된 계획레벨(도로, 등)에 따라 실 시공시 본 단지의 레벨 및 경사로, 단차, 계단 등의 길이, 형태, 종류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공범위 외 기반시설의 세부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 지구단위계획 등 상위계획에 의해 설치되는 공지 및 보행로 등은 외부인이 이용 및 통행할 수 있습니다.

• 1층에 계획된 공개공지는 건축법에 따라 일반인들이 이용 가능한 공간으로 상시 개방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전혀 관련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일부 영향이 발생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놀이터의 놀이시설물 및 파고라 등의 크기, 형태는 추후 실시설계 진행에 따라 변형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진입을 위한 램프의 마감재는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 비상차로는 외부 도로와 바로 연결되고 진출입부(보행자출입구)에 이동식 볼라드가 설치될 수 있으며, 소방차, 통학차량 및 기타 서비스 차량의 이용 시, 별도의 출입 관리가 필요합니다.

• 각 세대 거실 및 일부세대 침실 등의 분할형 이중창호에 설치된 중간바는 이삿짐 운반시 사다리차량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야 하며, 이를 어기고, 사다리차량을 이용하다가 발생하는 모든 사고의 책임은 입주자에 있으니 이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안전관리시스템을 위한 CCTV의 설치로 인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민원 및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부에 설치되는 공개공지는 공공에 개방되는 시설로서 입주자 임의로 휀스를 설치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없으며, 인·허가 협의 등에 따라 디자인, 범위 등 세부계획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상위법 및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정해진 공공보행통로는 단지내부 시설이지만, 외부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며, 인·허가 협의 등에 따라 디자인, 범위 등 세부계획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에 설치되는 미술작품의 위치 및 형상은 설치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미술작품 설치로 인해 일부 호실의 조망권, 일조권,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는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일부 단지내 보도는 상위법에서 정한 공공보행통로로 입주민 외에 외부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며, 입주 후 외부인의 보도이용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4층 포디엄 상부(3층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 지붕상부)에 아파트 커뮤니티시설의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어 이와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 소음, 진동, 냄새, 미관저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4층 포디엄 상부(3층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 지붕상부)는 세대에서 접근 및 사용할 수 없고, 관리자가 출입할 수 있으며, 이로인해 사생활침해, 소음 등 생활권 침해가 발행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업시설(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주방 배기를 위한 배기덕트 및 환기시설이 세대 인근에 설치될 수 있으며, 소음, 냄새, 진동 발생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시설 및 상업시설(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설비관련시설 등의 위치 및 면적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계약면적이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시설의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합니다.

• 단지 계획상 지하1층 주차장의 일부구간(401동, 402동, 403동 주변)은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의 주차구획으로 계획되어있어 아파트의 주차가 제한되오니, 이점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부의 일부 벽체는 본 공사시 사용성 및 품질확보, 하자예방 등을 위하여 벽체의 재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5층 주차장은 다른층 지하주차장과 달리 일부분만 계획되어 일부동(401동, 402동, 403동)만 연결되고 404동과 405동은 연결되지 않아 이용에 불편함이 있을수 있으니, 이점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합니다.

• 대지주위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항은 사업주체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 사업지 주변으로 코오롱 하늘채 및 한신더휴 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추가로 타사(또는 조합)의 개발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개발 시 건축물의 높이, 배치, 형태 등으로 일조 및 소음, 조망의 간섭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대전천 변에 인접하고 있어 유출지하수 발생 시, 유출지하수 처리계획이 필요할 수 있으며 준공 이후에는 유출처리비용이 각 세대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③ 아파트 주동/공용부

• 하기 사항에 따라 일조·조망·사생활 침해, 소음·빛공해·분진·냄새·진동 발생 등 환경권을 침해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 외부장식물에 의한 빛공해, 조망 및 일조 침해(문주에 인접한 세대는 문주로 인해 조망 및 일조 침해)
- 문주, 쓰레기집적소, DA등 외부 구조물에 의한 조망권, 일조권 침해 및 구조물 빛 반사에 의한 빛공해
- 단지 내 각종 시설물 및 장식물(옥상구조물, D/A, 탑라이트, 쓰레기분리수거장, 자전거 보관소 등)은 설계/안전/시공의 사유로 위치/개소/규모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기계실/전기실/발전기실/제연휀룸/우수조/정화조/정화조 배기탑/상업시설(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및 실외기 등에 인접한 세대의 소음, 냄새, 진동 발생 및 돌출물/시설물(의장용 구조물, 항공장애등, 위성안테나, 피뢰침 등) 등으로 인한 일조, 빛공해, 조망간섭 등의 환경권 침해
- E/V 운행에 따른 소음, 진동 등 발생으로 인한 환경권 침해
- 단지 배치계획 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 위치 및 공동주택의 특성에 따라 소음 발생, 일조·조망·사생활권 침해 등 환경권 침해
• 단지 출입구의 문주는 형태 및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체 주동 필로티에는 인·허가과정에서 다양한 시설물들이 배치되어 있으며, 실 시공시 시설물의 종류, 규격, 마감재, 디자인, 천장고 등 세부사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필로티 및 커뮤니티에 인접한 저층세대로 소음 등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주차장은 입주자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으로 각 동별, 세대별로 주차위치를 지정하여 주차할 수 없으며,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 휀이 노출됩니다.
• 지하주차장, 커뮤니티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 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의 배치 및 사용상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 주차대수는 대지형태, 주동배치에 따라 동별 차이가 발생될 수 있으며 주차대수는 전체세대에 대한 지하에 배치된 주차대수의 평균대수이므로 각동과 인접된 주차장이 주차대수보다 부족할 수 있으니 이에 대해 명확히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주동 배치계획 상 각 동별로 지상, 지하 동선거리가 상이하고, 또한 같은 이유로 부득이하게 각 동별로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 홀까지의 거리가 상이하고, 주차대수가 고르게 분포되지 못하여 주차장 이용에 불편할 수 있으니 계약전 해당 동의 계획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차량출입구에는 지하주차장 출입램프가 설치되며, 또한 주차 차단기의 위치는 현장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일반주차, 장애인용주차, 확장형주차, 경형주차, 전기차충전면 등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각 용도별 주차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아파트,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계획된 복합시설로서 아파트의 지하주차구획은 타시설과 구분이 되어 있으나, 차량 출입구 및 일부 동선이 혼재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주출입구는 주변에 따라 위치 및 구조형식 등이 동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동 출입구의 형태(평면 형태, 외관 형태) 및 크기는 동 평면의 형상 및 진입 방식에 따라 각 동 및 동 출입구별로 상이합니다.
• 소방서 협의 결과 비상차량 동선 및 정차구간, 에어매트 설치구간 등 위치 및 규격이 변경될 수도 있으며, 에어매트 설치 위치에는 교목 식재는 배제되며, 소방서 점검 시 사다리차 전개에 문제가 되는 경우 일부 수목에 대해선 상부 가지 치기 또는 재배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쓰레기 분리 수거함 위치는 사용성 및 지자체 조례 등의 최종 검토결과에 따라 위치 및 개소가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자전거 보관소 위치 및 개소는 보행동선, 보관 편리성 등에 따라 현장 실시공시 각 동별로 위치가 삭제 또는 변경되거나 추가 될 수 있습니다.
• 지하 엘리베이터 홀에 설치되는 설비 및 제습기 가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됩니다.
• 주동 지하 및 지상층 로비 출입문은 마감을 고려하여 문 크기, 위치, 폭 등 세부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우편물 보관함의 설치 위치 및 개소는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상, 동 출입구, 부대시설, 조경 구간, 포디움 상부 등 단지 내 설치되는 난간의 형태, 높이, 재질, 색상 등은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상 난간 턱 높이조정, 난간형태 및 재질은 변경될 수 있으며, 단위세대 창호계획 및 공용부 창호 변경 등에 따라 입면 등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우·오수 배관은 옥외배관 최종검토 결과에 따라서 실시공 위치 및 개소가 조정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상업시설(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이 지상1층~2층 까지 계획되어 있어, 일부 동의 저층세대는 해당 시설의 이용으로 인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부 표고차이 및 주변시설 및 아파트로 인해 일부 세대의 경우 조망 기타 생활환경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내부에 위치한 설비관련실(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휀룸실 등)로 인해 인근 해당 동 및 세대에 소음이 발생하거나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 및 지상1층에 쓰레기수거장이 위치하여, 수거차량 상시 접근에 따른 교통 통행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소음 및 진동, 냄새, 해충, 미관저하 등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바랍니다. (지하1층 : 재활용 및 종량제 쓰레기 수거장 계획 / 지상1층 : 음식물 쓰레기 수거장 계획)

- 동별, 세대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침해가 발생되는 세대가 일부 존재하며 수분양자는 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외부 시설물(DA, 쓰레기집적소, 커뮤니티 및 상업시설 실외기 설치공간 등)의 위치, 색채, 재질, 디자인은 본 공사시 관계기관의 협의 및 디자인개선 등의 이유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시 홍보물의 모든 도면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컷으로 착공 및 설계변경 시 또는 실제 시공시 시설물의 배치, 구획, 면적, 모양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모형의 조경 및 식재, 주변 환경, 부지 고저차, 주거동 외관 디자인(외벽의 줄눈, 리브형태, 지붕모양, 입면마감재료, 색채, 측벽, 옥탑장식물, 몰딩, 창틀모양 등), 부대복리시설의 색상 및 형태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보행출입구, 차량 진출입로 등은 단지 주변 도로의 선형 및 경사도에 따라 본 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지면적은 확정측량에 따라 면적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은 공간 활용의 개선을 고려해 동일 면적 내에서 실배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재질, 색채, 가구 및 집기류 등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외벽마감은 특화 디자인 계획에 따라 시공하며, 마감재의 위치, 색채, 재질, 디자인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시설 및 식재의 종류, 수량 식재위치는 인·허가청의 요청 혹은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한 설계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부 마감재 사양은 현장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해당 현장 마감재 사양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기현장과 비교하여 추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동별, 층별, 라인별로 외부마감재료와 색상 및 외부창호 색상과 디테일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옥상에 설치되는 시설물(옥상장식물, 구조공간, 태양광집광판, 설비시설물, 옥상조경 등)의 위치, 형태,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 시 홍보물, 모형, 이미지 등에 제시된 마감재 및 제공집기는 실제 시공시 재질, 색상,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시설의 구성 및 건축이용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본 공사 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합니다.
- 분양안내책자(카탈로그 등)에 표현된 커뮤니티시설(주민운동시설 등) 내부에 표현된 시설물, 냉난방기기, 집기류(기기 및 비품 등)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별도로 제공되지 않으며, 입주민 부대복리시설에는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및 품목만 시공하므로 기타 시설, 기기 및 비품은 입주 후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구입하여 설치 및 운영, 유지, 보수, 관리하여야 합니다.
 (실제 시공될 시스템 등 설치품목은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비교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으니, 계약 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공동시설은 입주민이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만을 제공하며, 전자기기, 목재류 등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습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가급적 설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 관리사무실, 지하주차장 등 부대복리시설 및 상업시설은 동선, 성능개선 및 대관 인·허가를 통하여 실시공시 위치, 다른 실로의 변경 및 통합, 사용자 동선, 입면 형태 (색채, 재질, 간판 형태 모양), 실내구획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경우 주차 편의성 등을 위하여 주차구획면의 위치 및 주차대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벽체의 두께, 마감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합리적인 구조계획 등을 위해 기둥 및 벽체의 크기, 위치, 두께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상2, 3층의 연결브릿지는 본 공사시 구조 및 상품성 개선, 관련기관 협의 등에 따라 디자인, 구조계획(기둥의 크기, 위치, 구조방식 등), 크기, 높이, 폭, 위치 등 세부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합니다.
- 분양카달로그 또는 팜플렛 등에 표현된 단지 커뮤니티에 제공되는 시설물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일부 시설물은 제공되지 않음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계약하셔야 하며, 향후 입주민들의 관리규약에 따라 자체적으로 유지 및 관리, 운영하여야 합니다.
- 옥탑, 옥상 및 지하주차장 신축줄눈은 공사계획에 따라 미시공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시공시 해당부위 백업제 및 코킹은 시공하지 않습니다.
- 일부 아파트 지붕 및 지상 일부구간에 경관조명, 공청TV안테나, 무선통신 안테나 및 이동통신 기간사업자 중계기 등이 설치될 수 있고 상세계획(설치면적, 위치, 형태, 사양, 디자인 등)은 시공 단계에 최종 확정되며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 시공시 연돌효과 저감을 위한 방안으로 공용부 창호의 설치 위치, 개소, 크기, 높이, 사양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외 공용부에 설치되는 전기, 통신관련 시설물은 사업승인도서에 준하여 시공되며, 통신단자함/전기분전반은 사용성 개선을 위해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트렌치시공시 시공부위의 주차구획은 트렌치폭을 포함하며, 트렌치가 측면, 배면에 시공될 시에는 주차라인마킹은 하지 않습니다.
- 엘리베이터홀, 부대시설의 경량천장틀 시공부위에 천장틀의 처짐 등 기능상, 안전상 지장이 초래 되지 않을 경우 마이너찬넬보강은 제외합니다.
- 지하주차장은 인.허가 도서에 준해 설치되며,해당 천장고 초과 차량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구분	주차장 차로의 높이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지하 1층	2.7m (단, 주차공간은 2.1m 이상)	2.7m
지하 2층~지하 5층	2.3m (단, 주차공간은 2.1m 이상)	2.3m

- EPS, TPS, AD/PD, PIT, ST, AV 등의 내부벽체(ALC(경량콘크리트블록), 조적벽체, 콘크리트벽체)는 초벌미장 시공을 제외하며, 해당구간의 조적벽체 미장은 E/V 홀 또는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만 시공 합니다.
- 남동측 주차장 출입구는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모든 계약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으며, 북서측 주차장 출입구는 공동주택 전용 출입구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사용상의 문제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한 것으로 간주하고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시멘트 몰탈 마무리두께는 15mm 내외로 하며 바탕면에 따라 오차범위 5mm를 포함합니다.

- 창호는 공사여건에 따라 ±50mm범위 내에서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홀에 설치되는 창의 개폐여부 및 개폐창 위치, 방식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업시설과 공동주택이 함께 사용하는 외부 셔틀엘리베이터로 인하여 인접한 세대들로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홀, 지하층 통행로 등 공용부의 벽체타일 및 세대 아트월은 에폭시 떠붙임 공법으로 시공시 6~9지점(600*600기준) 지지로 시공합니다.
- 무늬코트 도장 마감인 경우, 도면 지정된 부위에 수성 페인트 도장 후 무늬코트도료를 1회 스프레이 도장합니다. (상도코팅은 수성으로 시공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무광으로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주방 배기, 정화조 배기를 위한 배기덕트 및 환기시설이 세대 인근에 설치될 수 있으며, 소음, 냄새, 진동 발생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탑승위치 등)은 견본주택에 비치된 사업승인도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최종 시공은 사용승인도면에 의거하여 시공됩니다.
- 동조합으로 인한 요철 및 입면디자인으로 인한 장식으로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일부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아파트 및 상업시설의 외부에 설치되는 장식 및 돌출물 등의 크기, 깊이, 위치, 설치여부, 상세, 재질, 색상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의 계단실, 복도 및 엘리베이터홀에 설치되는 창의 크기, 높이, 위치, 개폐여부 및 방식 등 세부계획은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피난안전구역은 각 동 22층에 설치되며, 향후 상세설계에 따라 피난 안전구역의 위치, 그릴, 창호, 동선, 마감 및 층고, 주변 단위세대 층고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7층 이하의 단위세대에 설치되는 일부창호는 소방대진입창으로 사용되어 유리에 별도 표식이 부착되며, 해당창호는 향후 소방서 및 관련기관 협의 등에 따라 창호의 개소수, 적용층수, 형태, 크기, 위치, 높이, 열림방향, 사양, 유리,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84A 타입의 경우 동일타입이지만 주동 / 라인별 소방관 진입창의 위치가 서로 상이하게 설치되오니 청약, 계약전 이점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당 현장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재활용품 및 종량제는 지하1층, 음식물쓰레기는 지상1층에 위치하여 이용시 수거장이 구분되어 불편이 발생할 수 있고, 소음, 진동, 냄새, 해충, 미관저하, 수거차량 상시접근에 따른 교통 통행의 불편 등 환경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당 현장 지하1층 주차장은 판매/근린생활 시설의 주차장과 아파트 주차장이 구획되어 있으며, 판매/근생주차장 이용시 주차비 징수 등 불이익을 받을수 있으니 주의바랍니다.
- 사업부지에 포함 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 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영구배수 시스템 유지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일부 세대는 경관 조명에 의한 빛 공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경관조명, 지상 기타 시설물 설치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 또는 계약자 비용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 단지 공용부위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 및 특정 서비스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 및 경관조명, 단지홍보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휴대폰 및 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 서비스운영과 유지비용 등)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옥탑 및 지붕에는 경관조명, 항공장애등, 태양광집광판, 안테나 등이 설치 될 수 있으며, 상세계획(설치면적 및 위치, 형태, 사양, 디자인 등)은 시공 단계에 최종 확정되며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최상층 및 지하주차장, 지상 일부구간에 이동통신 중계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및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옥외보안등 및 지하, 지상층 CCTV 설치 위치는 본 공사 시 기능과 감시 범위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대지 인접도로 등에 인접한 저층 세대에는 옥외보안등, 기타 보안시설 등에 의한 빛 공해 및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 될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구내용 이동통신 장비 및 중계기는 지하주차장 및 주동 지붕층과 지상층에 설치 됩니다. 실 시공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해야 합니다.
 ※ 옥외안테나, 중계장치 설치위치
 - 옥상층 : 401동, 402동, 404동
 - 지하1층 : 각동 EPS/TPS
- 당해 건물 측면 및 옥상에 항공장애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빛 공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구내용 이동통신 장비 및 중계기는 지하주차장 및 주동 지붕층과 지상층에 설치 됩니다. 실 시공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해야 합니다.
- 기계/전기실 등은 실시공 시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협의 후 최종 확정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사업승인·허가도서 기준으로 전기차 주차구획과 충전설비의 설치 위치로 시공예정이나, 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충전설비 설치 공간으로 인해 일부 주차구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용부 등에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해 열선이 설치되며, 사용에 따른 전기료가 발생됩니다.
- 전력공급을 위해 필수 기반시설인 한전 공급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한전패드 위치 등 부지제공 계약의 승계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으며, 설치 위치, 장소, 면적, 수량 등은 한국전력공사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에 면하거나 인접한 실은 엘리베이터 운행중에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홀의 형태는 동별, 호수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CCTV와 주차장 카메라의 설치 및 촬영은 입주자의 방범과 편의성을 위해 설치되므로 동의 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위배로 보지 않음을 인지 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물의 발전기실에는 비상발전기가 설치 될 예정이며, 점검 등으로 인한 기기 작동 시 소음 및 진동 등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차량출입구 통행 개선을 위하여 차단기가 추가설치, 삭제, 위치이동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도로폭 확대 및 보행로폭 축소될 수 있습니다.
- 무인택배함은 각 세대별 접근 거리가 상이할 수 있으며, 설치 위치 및 개소는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복도 및 전용면적 천장 내부가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가스배관 등 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지하주차장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되며, 각 주동 공용홀로부터 접근의 형평성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동 옥상에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설비는 본 공사시 효율 개선 등의 사유로 설치위치, 수량, 크기, 각도, 높이, 사양 등 세부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건물 옥상에는 태양광 발전설비 등이 설치 될 예정이며, 기기 작동 시 하부 세대에 소음, 냄새, 그을음, 진동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시고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옥상에 설치되는 시설물(옥상장식물, 구조공간, 태양광집광판, 설비시설물 등)의 위치, 형태,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민용 자전거 보관소는 1층과 지상3층 포디움상부 주동 필로티에 계획되어 있어 엘리베이터로 자전거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점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합니다.

④ 단위세대

- 동별, 세대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침해가 발생되는 세대가 일부 존재하며 수분양자는 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에는 상부 배수배관이 천정내 설치될 수 있으며, 배수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며, 비확장형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될 수 있으니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보조조명, 커튼, 소파, 거실장, 침대, 책상 등의 이동식가구, 디스플레이 가전, 소품 등은 세대연출을 위한 것으로 본 공사 제외 품목입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 본 공사 및 하자보수 시 동등수준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 감지기, 유도등, 스피커의 개수 및 위치는 견본주택용 소방시설로 본 시공 시 각 단위세대 타입별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그 설치 위치가 결정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환기구의 크기 및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으며, 실내 환기성능을 고려하여 위치 및 개소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마감재의 사양은 주택형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에서 차이점을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시 타일류, 세라믹타일, 엔지니어드스톤 및 천연가공석(거실 벽, 주방 벽/상판, 욕실 벽/바닥, 현관/발코니 바닥 등)의 나누기 및 줄눈 두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타일류 및 세라믹타일, 천연가공석의 줄눈나누기, 마감 등을 고려하여 월패드, 세대분전함, 배선기구, 보일러 온도조절기 등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타일류, 세라믹타일, 엔지니어드스톤, 천연가공석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단차, 코너, 마감재접합부, 패턴 등은 본 공사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수전류, 욕실 마감자재(양변기, 세면기, 휴지걸이, 수건걸이, 코너선반, 수건선반 등), 욕실FAN 등의 위치는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의 벽체 마감재 종류 및 두께에 따라 내부공간 면적이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아트월 간접조명 설치시, 안방앞 발코니로 스프링클러 배관연결을 위해 안방분합문의 높이가 100mm 정도 낮아지며, 안방커튼박스의 높이가 축소되어 커튼레일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커튼박스 시공 시 가구 간섭부분(옵션포함)은 가구 사이즈가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일부 타입은 보조주방 창호를 통해 보일러의 측면이 외부로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빌트인 주방가전 미선택 시 기본형 수납공간 등으로 시공되며, 비치하는 냉장고 크기에 따라 냉장고 일부가 돌출될 수 있습니다.
-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설치되는 가구의 사이즈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가전 기기 등 설치 공간의 크기는 견본주택과 같으며 그 보다 큰 가전 기기는 해당 공간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 신발장 또는 창고, 기타 세대 내부에 세대분전반, 세대통신단자함 등이 개별 또는 통합 설치되며, 이로 인한 일부 가구 및 선반의 구조, 기타 마감이 견본주택 및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평면 타입에 따라 적용 품목(가구, 가전, 등기구, 스위치 등)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등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등기구 보강은 "원형 매입등 φ800, 사각 매입등 800*800" 규격 이상에만 해당됩니다.
- 침실, 욕실 등의 벽체 두께 변경에 따라 문틀의 폭(벽체 두께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특성상 세대 내 가구배치, 평면배치, 기타 품목 시공위치는 입주자 개인별 변경 요청을 할 수 없으며, 변경 필요 시 준공 및 시설물 인수인계 후 입주자 개인이 직접 시행하여야 합니다.
- 주방씽크장 하부에는 온수분배기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씽크장 하부의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수납이 제한됩니다.
- 유상옵션품목(가구, 가전, 평면선택 등)은 반드시 사전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합니다.
- 유상옵션품목 선택시 적용되는 거실 아트월 및 주방상판/벽체 적용되는 세라믹타일은 본공사시 제품특성상 색상 및 무늬(패턴/결)가 동일하지 않을 수 있는점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가구 힌지, 레일 등 가구 하드웨어는 본공사시 제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바닥 마감재는 견본주택과 폭, 색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 현관문 및 그외 철재/PD도어의 도장, 색상, 디자인 및 세부 디테일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슬라이딩도어와 가구 및 벽체와의 간격은 서로 상이할 수 있으며, 슬라이딩도어는 실내창호로써 기밀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거실,주방,복도 등 바닥마감재 옵션 선택시 바닥에 물기 등이 묻어 있을 경우 미끄러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제품 및 줄눈 등의 오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유상옵션 품목 중 거실아트월,주방상판/주방벽체 세라믹타일 선택 시 본공사 시 운반 및 품질확보를 위해 분절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추가 분절되어 시공될 수 있사오니 계약 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거실,주방 유상옵션 간접등 우물천정 선택시 본공사시 설비 및 전기배관 설치 고려하여 우물천정 높이(깊이) 가 축소 및 조정될 수 있사오며, 재질 및 디테일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트월, 주방벽, 욕실 벽/바닥, 현관/세탁실 바닥 등의 타일 나누기는 실시공 시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에어컨은 유상옵션품목으로 미선택 시 전 평형에 냉매배관 2개소(거실 스탠드형 기준 1개소, 안방 벽걸이형 기준 1개소)가 제공되며, 천장형 에어컨을 위한 냉매배관 및 드레인 배관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 욕실, 현관 등은 바닥 단차설계가 적용되며, 출입문 개폐 시 신발 걸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벽, 측벽, 세대간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가구 등이 다소 축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인접세대 및 동일세대 내 각 부위별 확장여부(상하좌우)에 따라 단열재 설치로 인한 벽체 돌출

및 실사용 면적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형 선택 시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으며, 이는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확장형 옵션 선택세대의 일부 비확장 발코니(안방발코니) 중 외기에 면하는 일부 벽체는 결로방지용 단열재가 설치되어 실제 발코니 사용면적이 축소될 수 있으며 벽면 및 천장에 단열 설치로 인한 단차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형 선택 시 주방 발코니 천장에는 각종 배관 및 덕트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발코니 확장/비확장형 선택 및 옵션형 평면 선택 유/무에 따라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수량 등은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부세대가 발코니 비확장형 세대일 경우 천장 단열재 설치로 인해 우물천장 및 커튼박스의 깊이, 형태, 디자인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계약자는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발코니)은 본 공사시 마감재 설치 등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는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바닥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공간으로 계획됩니다.
- 각 세대(비확장형 세대 포함)의 발코니 중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계약자의 경우 관련 사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의에 의거 계약함을 확인합니다.
- 본 공사시 코킹 시공 부위는 달라질 수 있으며, 욕실 천정 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침실 반침장, 신발장, 욕실장, 거울 등 설치되는 가구의 비노출면(후면, 하부, 천장)에는 마루, 타일, 엔지니어드스톤, 천연가공석, 도배 등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으며, 주방가구의 경우 후면/천장에는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욕실 거울의 경우 보호페인트가 입혀졌더라도, 자재특성(은 성분)상 산성, 알카리성 세제와 쉽게 화학반응하며, 습기에 의해 변색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바 욕실 환기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여야 하며, 입주 이후에 발생하는 유지 보수 및 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하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가 책임져야 합니다.
- "수분양자(입주자)"가 임의로 전유세대 인테리어 공사 등을 수행하여 하자 또는 성능불량이 발생한 경우 "시행사" 및 "시공자"에게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등 일체의 요구를 할 수 없으며,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침실, 거실, 주방의 조명스위치는 이동, 취침준비 등을 고려하여 마지막 소등되는 회로가 몇 초간 지연 후 소등되는 조명스위치가 설치됩니다.
- 세대 내 유리의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위치별로 특성이 다른 유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각종 도어 및 창호류의 사양(유리사양, 창틀 디자인, 손잡이, 창호크기, 루버형태, 재질, 색상, 제조사, 열림방향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하이오티(Hi-oT) 및 보이스홈(유상옵션) 서비스의 경우 이동통신사/포털사/제휴사의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해당 업체 정책에 따라 사용요금 및 사용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하이오티(Hi-oT) 및 보이스홈(유상옵션) 가전기기 제어서비스는 하이오티 연동된 IoT가전기기를 구매하고 세대 내 무선인터넷 환경이 구축된 경우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기기 제조사의 정책에 따라 사용제한 및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서비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냉방기능은 시스템에어컨 유상옵션 선택세대에 한하여 적용됨)
- 하이오티(Hi-oT) 서비스및 보이스홈(유상옵션) 서비스는 성능 개선이나 입주 시의 기술개발 환경 등의 사유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 후 플랫폼 운영사의 정책에 따라 사용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현장여건, 구조, 성능, 및 상품개선 등의 사유로 조명기구, 월패드, 분전함, 콘센트, 소방설비 및 배선기구류 등이 동등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건립되지 않은 세대의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는 디자인, 사양, 갯수, 설치위치 등이 건립세대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내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장소별 색온도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마감 상황(타일 및 천연가공석의 줄눈나누기, 도배와 가구 설치내용 등)과 제품의 품질수준 유지를 고려하여 월패드와 조명기기 및 배선기구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갤러리(루버) 창 프레임 및 갤러리의 색상은 외부 색채 디자인에 따라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전열교환 환기장비가 실외기실 / 다용도실 등 천정에 노출 설치되며 위치는 변경될 수 있고 작동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환기장비에는 외부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HEPA필터가 설치되며, 필터는 연 1~2회 교체하는 것을 권장하며, 사용정도에 따라 교체주기는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장비설치외 1개의 필터가 입주시 추가제공되며, 이후 필터구입 및 교체는 입주자 부담분입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천장형 냉난방겸용 에어컨은 방문객을 위한 시설이며, 본 시공시 냉방전용 시스템에어컨이 유상옵션으로 제공됩니다.
- 화장실 천장에 급수를 위한 분배기 및 상부층 배수배관이 설치 됨에 따라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구가 천장에 설치됩니다.
- 각 세대 신발장 또는 침실 내에 세대통합단자함이 설치되며, 시공과정에서 위치 및 마감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 인증으로 공동현관 자동문 출입이 가능한 스마트폰 키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어 보조 출입키(카드형 RF키)는 세대 당 2개가 지급 됩니다.
- 스마트폰 키 및 스마트폰 자동 주차위치 저장 시스템은 스마트폰의 Bluetooth 기능이 활성화 되어 있어야 하며, 일부 스마트폰 기기에서는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 자동 주차위치 저장 시스템은 세대별 등록된 차량을 지하주차장에 주차할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
- 주방가구 내부에 콘센트가 설치되는 경우, 해당 가구장 내 수납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전원선이 노출됩니다.
- 주방스마트거치대 전원 및 통신단자용 통합콘센트가 거치대 후면 높이에 설치 되며, 후면에 주방거치대 전원선 및 통신케이블이 노출됩니다.
- 주방스마트거치대의 전원은 해당기기 후면에 설치된 콘센트를 사용합니다.
- 조명 유상옵션 선택시 안방앞 발코니로 스프링클러 배관연결을 위해 안방분합문의 높이가 100mm 정도 낮아지며, 안방커튼박스의 깊이가 100mm 정도 축소됩니다.
- 주방에 가스배관, 렌지후드 환기덕트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일부 가구의 깊이가 줄어들 수 있으며, 선반의 구조가 견본주택 및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욕실 벽체 등 시멘트 몰탈 떠붙임 공법의 뒷채움은 80%로 시공합니다.

• 대피공간 없이 발코니에 하향식 피난구(관계법령에 따라 화재 등 긴급 피난시 상부세대에서 하부세대로 하향식 피난구가 개방되고, 사다리가 내려와서 아래 세대로 피난이 되는 구조)가 설치되는 경우, 피난구의 설치 위치는 층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화재시 대피할 수 있는 하향식 피난구는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가 필요하며, 하향식 피난구 설치세대는 비상시 하향식 피난구 사용을 위하여 항시 실외기 출입문은 닫힌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하향식 피난구로 인해 층간소음 및 방범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인·허가상 불가피한 사항이므로 시공자가 책임지지 않으며, 또한 하향식 피난구를 통해 소음 및 누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난방은 개별난방 방식으로 보일러가 제공되며, 가동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방 상부장 위쪽으로 가스 배관 등이 노출 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옵션(매입조명, 플랩장) 선택시 안정기 등의 설치로 가구 내부가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가스차단기 설치에 따라 주방 상부장 매입조명(옵션)의 적용 부위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 수전, 도기 등의 일부 설비 자재는 발주처 지정품목으로 추후 협의 사항에 따라 모델명 및 설치여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카투홈, 홈투카 서비스는 현대/기아차 19년 이후 생산 모델 중 카투홈, 홈투카 기능이 있는 차량으로 해당 차량의 커넥티드서비스(블루링크, UVO, 제니시스)에 가입된 경우에 한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해당서비스는 제조사의 운영 및 요금 정책에 따라 기능 및 비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제조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타입은 피난방향을 고려하여, 단위세대 평면도상 현관문의 열림방향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인덕션+독립형 후드 유상옵션을 선택 한 세대의 경우 가스 쿡탑 사용이 제한됩니다. 추후 가스 쿡탑 이용 시, 가구 수정공사가 필요하며 이는 입주자 분임을 인지하고 계약해야 합니다.
• 욕실 벽, 바닥 타일의 줄눈 위치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줄눈 및 타일 사이즈가 일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하여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단차는 침실내부로 물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됩니다.
• 설비 배관상의 이유로 커튼박스 크기는 타입별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현관문 및 실외기실도어, 그릴의 도장, 색상 및 디자인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철제방화문(현관 등)은 방화성능을 고려하여 본 공사시 하부씰, 상하좌우 프레임 형상 및 재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우물천장은 천장내 설비배관 등에 의하여 천장고 및 길이, 크기, 높이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커튼박스 길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시 각종 도어 및 창호류의 사양(유리사양, 창틀 디자인, 손잡이, 창호크기, 루버형태, 재질, 색상, 제조사, 열림방향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비상대피동선으로 견본주택 창호의 유리를 일부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본공사 시 유리가 설치됩니다.)
• 목창호(일부 실 제외)에 손끼임 방지 장치가 설치될 예정이며, 상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단위세대의 경우 대칭형으로 계획되어 침실, 거실, 주방 등의 향, 조망이 서로 다를 수 있으니 계약전 해당세대의 향, 조망 등을 확인하여야 함.
• 실외기실 내부는 물건 적재장소가 아니므로 적재시 에어컨 효율 저하 및 결로에 의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확장형 선택세대의 비확장 발코니 중 외기에 면하는 일부 벽체는 결로방지용 단열재가 설치되어 실제 발코니 사용면적이 축소될 수 있으며 벽면 및 천장에 단열 설치로 인한 단차가 발생될 수 있다. (실외기실 및 하향식 피난구실에는 결로방지용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음)
• 주방가구 옆면이나 뒷면에 PD내부 점검을 위한 내시경점검구(D50 Pipe)가 설치 될 수 있으며 점검구 마감을 위한 덮개가 노출 될 수 있습니다.
• 욕실천정내부 벽체, 다용도실 벽체, 실외기실 벽체에 PD내부 점검을 위한 내시경점검구(D50 Pipe)가 설치 될 수 있으며 마감을 위한 덮개가 노출 될 수 있습니다.
• 당 현장 각동 일부층까지의 소방관진입 창호 (하향식피난구실, 침실 드레스룸등)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소방관 진입을 위한 표식이 부착이 되며, 표식에 따른 조망간섭이 발생 될 수 있고, 임의 제거시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커튼월 룩 디자인 적용시 일부 세대의 창호 설치 깊이가 모델하우스와 상이할 수 있으며– **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 감지기, 유도등, 스피커의 개수 및 위치는 견본주택용 소방시설로 본 시공 시 각 단위세대의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그 설치위치가 결정됩니다.
• 본 공사시 제품개발에 따라 기능이나 디자인, 색상, 설치위치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동등수준의 다른 제품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 마감 상황(타일 및 천연가공석의 줄눈나누기, 도배와 가구 설치내용 등)을 고려하여 월패드와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옵션형 평면 선택 유/무에 따라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각 타입에 연출되어 있는 스포트라이트, 스탠드 조명 및 펜던트는 전시용으로 실시공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각 평면 타입에 따라 적용 품목(가구, 가전, 조명기구, 배선기구 등)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등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 세대 내 세대분전함, 세대단자함, 세대통합분전함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 월패드 및 배선기구류의 제품사양, 설치방향, 개소, 디자인 및 위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홈네트워크 설비 및 대기전력 차단 시스템유지 등에 따라 미 입주시에도 일부 전기사용량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세대분전함 차단시 홈네트워크설비, 방범 및 경보 알람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 주방에 설치되는 전열기구(콘센트, 스위치 등)위치 및 수량은 본 공사시 주방 가구, 쿡탑, 개수대, 악세서리 등 설치 위치에 따라 견본주택과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옵션 선택 유/무 및 사용성 개선에 따라 온도조절기 및 조명스위치는 통합형 또는 분리형으로 적용 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발코니 확장/비확장 선택 및 옵션형 평면 선택 유/무에 따라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스마트거치대는 주방 가구 유상옵션에 따라 설치되는 가구장 매립 조명과 간섭될 수 있으며, 이를 피하기 위하여 설치형태가 변경 될 수 있으니 계약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부의 벽체(경량벽 포함) 두께는 타입별, 위치별 상이할 수 있으니, 이점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108타입에 설치되는 외부 돌출 발코니 난간의 재질, 높이, 디자인, 형태, 설치위치, 세부 디테일 등은 본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선택형 옵션사항에 따라 공간의 크기 및 구성이 변경될 수 있으니 별도 안내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욕실 출입문의 위치는 상품성 개선을 위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최상층에 설치되는 세대의 경우 외부에 설치되는 pit의 설치 유무, 크기 및 테라스의 크기, 마감, 레벨, 난간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인해 주동 외부 입면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주의 위치, 크기 형태, 디자인 색상, 재질 마감 등은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무 영확히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저층부(1~3층) 포디엄(상업시설 등) 및 연결브릿지(2,3층)의 구조는 합리적인 구조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둥 및 보의 크기, 위치, 형태, 구조방식, 마감재, 결합방식 등 세부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저층부 상업시설 및 문주 등 외부 특화디자인은 본 공사시 상품성 개선 및 관련부서 협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일부 세대는 조망의 간섭 등 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동 돌출 발코니 및 최상층 테라스 유리난간대의 디자인, 재질, 크기, 높이 등 세부계획과 배수시설 등은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욕실 하부씰 (물받이 높이 등)의 형태, 높이, 길이, 재질, 디자인 등은 상품개선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욕실 세면대 하부장(옵션선택시)에 욕실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세대 각 실의 문틀의 두께, 길이, 높이, 디자인, 재질 등 세부계획은 본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실외기실 문의 재질은 평형별로 실외기실이 접하는 실에 따라 PVC 도어와 스틸도어로 서로 상이하게 시공되며, 실외기실 문의 형태, 크기, 디자인, 재질, 열림방향, 하부턱, 바닥 마감 및 레벨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층간바닥구조의 재질, 두께, 사양, 제품 등 세부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학교배치 관련 유의사항
• 학교배정 등 교육정책은 관할지역 교육행정기관의 정책에 따르며 입주시점 교육행정기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근학교 학생배치와 관련하여 초등학교는 대전 선화초등학교 배치예정이며, 중학생은 기존 학교군에 분산배치 예정이나 추후 본 공동주택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학생 수용 가능여부에 따라 차후 다른 학교로 이동될 수 있음을 확인 하여야 합니다.
• 당해 지구 내 교육시설 등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학생수용여건 변화 등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고, 학생배치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교육청(지원청) 등 해당 관청에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합니다.
- 초등학교, 중학교 : 대전광역시 교육청 행정과 : 042-616-8661~7, 홈페이지 주소: www.dje.go.kr

X 기타사항

■ 입주자 사전방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
- 당사는 「주택법」 제48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사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사전점검 대상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 공사 및 위생가구

■ 입주예정일 : 2027년 02월 예정(향후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전쟁, 내란,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노동조합 파업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으며, 잔금납부와 연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되며, 입주 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회사에서 선수관

리비를 부과합니다.

- 사업주체와 시공사는 수분양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채권회수를 위하여 입주관리(분양대금, 보증부대출금 등 채무 미완제 시 입주 및 소유권등기의 거부, 채무변제의 독촉, 가압류 등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적절한 조치를 위한 통지 등을 말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통학차량 대기소, 독서실, 주민운동시설(피트니스, GX, 골프연습장, 샤워실 등),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등

■ 공동주택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용됩니다.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9의2) - 지하주차장 차로의 높이 : 2.3m (일부 택배차량 통행 부위는 2.7m) -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유효높이 : 2.3m (일부 택배차량 통행 부위는 2.7m)

■ 학교 배치 등 관련분야 유의사항

- 당 사업지의 초, 중, 고교 배정은 교육청 주관사항으로 학교 배정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교육청(지원청)에 문의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초등학교 배정은 대전광역시교육청(지원청) 결정에 따른 것으로 사업주체나 시공사의 책임 범위가 아니므로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공동주택 성능등급 인증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따른 친환경 주택의 건설 기준 등)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 시)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단열조치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방습층 설치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호 제3항 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적용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이상 제품 적용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전동기, 펌프 등 고효율 기자재 적용
	고효율 급수펌프(마목)	적용	KS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 제품을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세대 내 설치 수전류는 절수형 설비 적용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각 실별 온도 조절장치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고효율변압기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간선의 전압강하는 내선규정에 따름
	조명설치(다목)	적용	세대 및 공용부위 조명기구 고효율기자재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세대 내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단지 내 공용화장실에 자동점멸 스위치 설치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요 보증 내용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공동주택임)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원)	보증기간
제01282022-101-0016300호	**378,255,710,000원**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 포함)까지**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관리형토지신탁 특약

- 본 공급물건은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신탁법」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 ㈜와이즈클래스에이, 매도자 겸 시행수탁자 우리자산신탁㈜ 간에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 계약방식으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실질적 사업주체는 ㈜와이즈클래스에이이며, 분양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 본 공급계약에서 시행수탁자 우리자산신탁㈜는 분양 물건에 대한 분양공급자(매도인)의 지위에 있으나 본 건 신탁의 수탁자로서 신탁계약에 의거 신탁업무 범위 내에서 신탁재산 한도로만 매도인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고, 본 공급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의무와 책임은 실질적 사업주체인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 ㈜와이즈클래스에이가 부담합니다.
- 모든 하자보수의 책임은 실질적 사업주체인 시행위탁자 ㈜와이즈클래스에이 및 시공자 현대건설㈜이 부담합니다.
- 본 공급물건은 위탁자 ㈜와이즈클래스에이와 수탁자 우리자산신탁(주) 사이에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것이며, 신탁해지 또는 신탁목적 달성 등의 사유로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즉시 모든 공급계약에 대하여, 개별 공급계약에 따라 해당 매수인에게 본 공급물건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즉시 해당 공급계약에 대하여, 공급자이자 매도인으로서 수탁자 우리자산신탁(주)가 가지는 일체의 권리와 의무(매도인의 담보책임과 기타 손해배상의무를 포함하되, 이에 한하지 아니함)는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위탁자인 ㈜와이즈클래스에이에게 면책적·포괄적으로 이전(승계)됩니다.
- 분양대금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서 정한 토지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및 그 밖의 부대 사업비 등 해당 분양 사업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과 관련된 분양대금은 반드시 본 공고에 규정된 수탁자(사업주체)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분양(매매)대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매도인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본 관리형토지신탁 내용은 본 공고 모든 내용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대금 채권의 양도, 보증약관 제 1,2,4조(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보증사고) • 분양대금채권의 양도

①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②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보증약관 제1, 2, 4조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 (보증사고)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구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소방통신감리
상호	㈜천일건축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예인종합건축사사무소	㈜한성기술단	㈜세정이에프씨
금액	4,257,207,900원	864,134,120원	1,760,000,000원

※ 상기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사업주체 (시행수탁자 겸 매도인)	시행위탁자	시공사
상호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주식회사 와이즈클래스에이	현대건설 주식회사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 13층(역삼동, 삼정빌딩)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29길 23, 지하1층(논현동)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75, 현대빌딩
법인등록번호	110111-2003236	110111-5346469	110111-0007909

■ **힐스테이트 선화 더와이즈 견본주택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4-16번지**
■ **사업지 :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85번지 일원**
■ **홈페이지 : http://www.hillstate-sunhwathewise.com**
■ **분양문의 : 1533-6963**
※ **방문예약 접수 시기는 추후 홈페이지 공지 예정**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본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 바랍니다.